

제334회 국회  
(임시회)

#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5년6월16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립공원공단법안
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계속)
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동물원법안(계속)
19.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계속)
29.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계속)
30.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계속)
31.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계속)
32.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계속)
3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된 안건**

-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
-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
-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
- 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
-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8
- 7.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제출) ..... 8
- 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 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 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 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 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28
-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38
- 18. 동물원법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 19.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 39
-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 2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42
- 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 2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46
- 2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48
- 25.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 48
- 2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 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9
- 26.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 27.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 52

28.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29.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30.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31.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32.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정부 제출)(계속) .....	54
3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	56
3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	56
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	56
3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	56
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	56
4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	56
4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	60
4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 .....	60
4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2

(10시18분 개의)

○소위원장 권성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국회(임시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요령은 과거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사를 하되 심사 대상 법률안 중 동일 제명의 법률안 또는 병합심사가 필요한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여 병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 또한 이전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4대강 수계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8일 저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날 합의사항은 5개 사항에서 합의를 하셨고요, 3개 사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수립·제출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개정안을 유보하고 다음에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수질법과 함께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근거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매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보전협회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위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환경보전협회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계속 감독해 가도록 하고, 시행령에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규정 삭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 수

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거의 관리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저희 위원님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다음 회의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도법상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행위 제한 완화 근거 신설에 대해서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행위 제한 완화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행위 제한 완화에 포함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정연만** 관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하수도법 체계하고……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이 하수관거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관거는 이 빨간 부분이 관거가 되겠습니다. 즉, 최대한 들어오는, 이 관거에 대해서 10년마다 정밀진단 하기로 했는데 하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이 법을 받았습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받던 것이 하수도로 갔기 때문에 이 조문을 정리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 빨간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는데,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이 법 규정이, 본래 하수처리장 개념으로 가져가려면 메인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는 것이 큰 의미를 지녔는데 이것은 빼고 지선, 각 개별 공장에서 들어오는 배수관거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위법을 개정할 때는 주로 하수 체계에서 들어오는 주 노선의 정밀진단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배수관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밀진단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실적 관리를 안 해 왔습니다. 안 해 오고 이것은 개별 공장이 여기까지 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미스가 돼서 새면 범죄행위가 돼서 바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단 오더 주기 전에 자기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어서 이번에 이것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공단에 있는 배수관거에 대한 정밀진단이 어떻게……

**○환경부차관 정연만** 없습니다.

이것은 배수관거고, 이 폐수 차집관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은수미 위원** 아니요, 배수관거……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것이요?

**○은수미 위원** 예.

**○환경부차관 정연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 보면……

**○은수미 위원** 그것을 정밀진단을 뺀다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은수미 위원** 그게 논란이었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지요.

**○은수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말씀을……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정밀진단을 빼도 업계가 여기까지 인입되는 것은 자기 관리, 법적으로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여기에서 중간에 만일에 크랙이 나서 폐수가 배출되면 무단방류라든지 법적으로……

**○은수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전적으로 정밀진단 하거나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지요.

**○은수미 위원** 그러면 업계에 맡겨 놓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조항인데 여전히 같은 것을 가지고 오신 것 같거든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사실 관리하려면 정밀진단 시 메인(main)관을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매일 관리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업계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런 뜻입니다.

○**우원식 위원** 그 사이에 유량계라는 게 있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최종 방류될 때 들어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거기 있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우원식 위원** 지금 유량계를 기준으로 해서, 현행 수질법에서는 운행일지 같은 것을 쓰기 때문에 유량계 전까지는 얘기하시는 게 맞는데 유량계 후는 그러면 관리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유량계 이후부터 차집관 거의 길이가 각 곳마다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예, 조금씩 다릅니다.

○**우원식 위원** 그것 관리는 지금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원식 위원**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지금 통상 이게 자연유하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개별시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유량계 차원에서 사실은 처리비용을 다 내는 거거든요, 종말처리 비용을 다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를 가져 올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원식 위원** 그거야 모르지.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공장 안이거든요. 공장 밖에 보면 지나가는 선까지만 이 배수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 부지 내에 있는 거거든요.

○**우원식 위원** 그래도 모르지요. 그것 어떻게 알아?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물론 그런데 사실 그럴 이유는 별로 없다는 거지요, 이 회사 입장에서.

○**우원식 위원** 그렇게 해서 공백이 생기면 거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겨날 수가 어요. 그래서 다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빼 버리면 유량계 전까지는 수질법에 의해서 그래도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게 관리가 안 되는 구역이 생긴단 말이에요. 양심만 믿으면 법을 뭐 하러 만들어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양심 차원이 아니고 지금 사실 이 비용을, 기업 입장에서는 만

약 유량계까지 하게 되면 비용을 다 제출을 합니다. 비용을 다 내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관리 공백이 생기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자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저희들 관리를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실익 없이, 행정부도 이것을 자체를 하나하나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지금 이 관리라는 게 어떻게 모든 것을 행정부에서 관리하겠어요? 설치하는 개인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지선관거, 하수관거 같은 거나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개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무단방류를 하면 처벌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집안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다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관리할 능력이나 그게 안 되는데, 인원도 없는데 이것까지 부과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지금 하수도법의 규정에 맞춰서 이것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거기에 맞추자는 뜻인데……

○**우원식 위원** 체크하는 데가 유량계에서 체크할 수 있고 그런데 그다음 부분을 관리에서 빼 버리면 그다음은 관리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처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소위원장 권성동** 지난번에 다 논의가 되기는 됐는데, 그게 정부정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정책을 바꾼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계셨듯이 이게 관리 안 하면서 너무 부담만 주고 있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자, 이런 차원이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가 계시면 부담을 주더라도 한동안 저희들 한번 더 관리를 해 보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관리에 지장이 많이 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 사실 관리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위법에 보면 하수도법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배수관거에 대한 정밀진단을 사실 그동안 관리를 안 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최봉홍 위원**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정부에서 전부 공사해서 처리해야 됩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개인들이……

○**최봉홍 위원** 개인이 합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개인에게 도덕적 의무를 줘서 이것 관리를 잘 해라’ 이런 부분의 관리능력……

○**소위원장 권성동** 현실적으로 관리도 못 하면서 법에만 규정해 놓으면 의미가 없는 것인데……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래도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들 한 번 더 관리를 해 보고 나중에 현실적으로 부담만 주고 사실 실익이 없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우원식 위원** 관리를 잘 하게 하세요. 관리를 아예 공백을 시켜 놓으면 어떡해?

○**소위원장 권성동**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규정 삭제 이 부분은……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실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했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시도 지사가 상수원 관리를 딱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의무를 줬는데 또 그것도 역시 현실적으로 되지 않아서 수도법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더 이것도 저희들이, 이 제도를 만들 때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시군에서 안 할 때 시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지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조문 자체는 저희들이 실익이 있다고 보는데 지정 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도법에 따라 관리하는 게 맞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더 시도지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철회한다는 얘기네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마지막 대청호!

○**환경부차관 정연만** 대청호 이것은 저희들이 특정 지역을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총량규제를 하기 전에는 행위제한을 넓게 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이 대표적인데 팔당이나 대청 할 때 저희들이 총량제 도입할 때부터 총량제가 도입되면 대청 지역 내에는 일정 부분에 대해

서 총량의 범위를 허용해 주겠다, 이미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먼저 지킨 게 팔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이 짜개지다 보니까 동시에 하지 못해서 이번에 대청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풀어진다고 오염이 문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풀어지는 과목은 총량제에서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총량의 범위가 없으면 추가적인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에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약속을 했었고, 또 들어간다는 게 주로 숙박업이라든지 일반 총량제 대상이 되는 항목에 해당되는 시설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정부가 발의한 안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우리 야당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은수미 위원**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권성동** 우원식 위원님 지난번 반대하셨는데……

이인영 간사도 아까 가면서 이 부분 동의한다고 하고 갔는데요.

말씀하세요.

○**은수미 위원** 지금 이게 충남과 충북 지자체 간에 이견이 있는 법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충북 지자체는 이것을 해 달라는 거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게 지자체 간에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은수미 위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저는…… 반대하고 있다, 상하류 간에.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자체 간에는 없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제도 도입할 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없고요.

○**은수미 위원** 충남에는 없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충남의 일부 단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은수미 위원** 그러면 충남 지자체장에게는 확인을 해 보셨어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저희가 입법예고 하고 할 때……

○**은수미 위원** 아니, 충남과 충북 간에 이게 약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저희가 입법에 고라든지 부처협의 할 때에는 의견 제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금강유역환경협의회라고 해서 시민단체에서는……

○**은수미 위원** 다만 시민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 금강구역 거버넌스에서 반대를 한대요. 그러면 일부 시민단체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래서 상하류 간에 이견이 있는 거라서, 저는 사실은 그 이견 조정을 좀 더 해 보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은데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그 문제는 하류에 있는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상류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 찬성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존에 있던 제도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옛날에는 오염총량관리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새로 제도를 만들면서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총량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용해 주겠다고 이미 그때도 설명을 했었고, 지역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류에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일부 계신 분들은 계속 상류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게 맞지요. 그러면 상류에 있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그런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팔당에서도, 오히려 충청도보다 더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팔당 상류까지도 그런 약속을 지켜 가지고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기존 제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충청도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 해 주게 되면 사실 이 지역 주민들,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 막말로 다 알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왜 흔들리냐면요 상수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용부담금 얼마 돈 안 받겠다는 겁니다. 행위제한 풀어 달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개발이익을 누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소위원장 권성동** 자, 이 부분은…… 차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회의할 때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이제 의견을 모으느냐 마느냐의 그런 과정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론적인 공방은 전개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듣기에는 이인영 간사가 잠깐 들렀다 가면서 야당 내에 의견일치가 됐다, 통과시켜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원식 위원** 조금 더 협의를 할게요.

○**소위원장 권성동** 은수미 위원님이 반대하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냥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통과를 시키지요.

○**은수미 위원**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다른 위원들은……

○**은수미 위원** 장하나 위원님도 찬성하시지 않아요.

○**장하나 위원** 저 일단 저도……

○**소위원장 권성동** 반대예요? 아니 잠깐, 반대·찬성만 말씀하세요.

○**장하나 위원** 차관님한테 질의를 해야지 찬성·반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우원식 위원** 질의해야지, 뭐.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은수미 위원** 질의는 하게 하셔야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이것 갖고 뭐…… 지난번에도 수도 없이 질의를 했는데 또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또 질의하고 질의하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까? 오늘 해야 될 법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우원식 위원** 질의하게 하세요.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런데 간사 얘기 틀리고 위원 얘기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장하나 위원** 간사님이 저에게 의견을 물으신 적이 없어서 저도 방금……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질의 한번 하고, 그리고 오후에도 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권성동**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세요.

○**우원식 위원** 점심 때 협의해서 의견을 낼게요.

○**장하나 위원** 질의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허락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물이용부담금 말씀하셨어요, 차관님이. 그런데 저희가 이미 한강 상·하류 간의 물이용부

담금 갖고 지자체 간에 너무너무 갈등이 있었고 그게 또 우리 소회의실에서도 얼마나 지난한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물이용부담금을 하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취지에 어긋난 일이 벌어졌고요.

저희가 금강 관련해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 복잡한 설명 다 건너뛰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한번 보았으니까, 특별히 다를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그게 아니라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상류 주민들은 부담금보다 개발이익을 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 허용한다면 정말 기본 법 취지까지 우리가 근간을 흔드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금강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금강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상·하류 관련돼 한강처럼 그렇게 격렬하게 하는 건 적습니다.

○**장하나 위원** 아직까지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차관 정연만** 적은데, 저희들 입장은,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속했던 것은 좀 지켜 주는 것이 그런 갈등도 좀 더 없애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물 관리하는 입장에서야 행위제한도 하고 총량제한도 하고, 사실 편하고 좋지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정부가 그렇게 가져갔을 때 지역에 있는 갈들을 과연 봉합하겠느냐…… 만약 이게 이렇게 되면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당연히 통과되는 걸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과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조직적으로 말씀들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1항에서 4항까지……

다음……

○**은수미 위원** 아니, 잠깐…… 1·3·5·6·8이다 합의가 됐다고 그래서요, 제가 합의사항…… 조금 그 당시에 논의가 달랐었던 것 같은데……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10시38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6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김민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주요 내용부터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 대부분 매칭 방법으로 지원하는 하수도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다른 국고 지원 수질개선사업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법률은 국고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개정안처럼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입장.

○**환경부차관 정연만** 검토보고 수용하고 저희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법률 형식에 비추어서 이 개정안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봐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7.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제출)**

**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40분)

○**소위원장 권성동**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정부가 제출한 국립공원공단법안과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먼저 국립공원공단법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국립공원공단으로 명

칭을 변경하고 지금 현재 자연공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관하는 내용과 그리고 현재 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 정착물을 매입하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성체계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이 생태적 가치라든지 생태계 서비스 향유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중요시되면서 공단의 기능과 역할 또 그동안 규제·단속 위주에서 국립공원 내 생물종·서식처에 대한 조사·연구, 그리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탐방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어떤 적극적 역할이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쌓아 온 공단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도립공원이라든지 군립공원, 기타 보호지역 관리에 적용해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규정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법을 제정하려는 것인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단 명칭 및 목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명칭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정부에서 각 관계부처 협의다 해서 제출한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최봉홍 위원 이의 없습니다.

○우원식 위원 좋은데요. 내가 늘 생각해 왔던 건데 기왕에 명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명칭 바꾸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동안 발의를 안 했는데 기왕에 한번 써야 되는 거……

국립공원이 안 맞거든요. 국가공원이라고 그래야 돼요, 국가공원.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을 국가가 세워야 국립공원이거든. 국립서울대학교 이렇게 이걸 짓고 세워야 되는데 공원이라는 게

국가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거를 국가가 지정한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외국에서도 내셔널 파크라고 그러는 거라고. 우리도 보면 국립공원 이게 나라가 세운 공원이 아니라 나라가 지정한 공원이라는 의미에서……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국가공원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립’ 자가 안 맞는 거야, ‘립’ 자가. 기왕에 바꿀 거면 국가공원으로 하는 게 맞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지금 다른 법에도 뭐 도립공원, 시립공원 이렇게 해 놔 가지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전부 바뀌야 돼.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바뀌야 돼.

○소위원장 권성동 그거하고 형평이 잘 안 맞아서 바꿀 때……

○최봉홍 위원 시설하고 국고에서 다 해야 하나 까……

○우원식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이거는 명칭이 원래 안 맞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난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국립’을 ‘국가’로 바꾸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바꾸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행정비용이.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건데 ‘관리’ 자 하나 빼기 위해서 할 거 같으면 아예 이번에 위상을 제대로 잡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장하나 위원 너무 좋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원식 위원님께서 갑자기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우원식 위원 맞는 거지.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잠깐만 들어 보세요.

국어학자라든가 또 다른 법률의 예를 좀 봐서 나중에 결정을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이거 하나 바꾸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문서도 다 바뀌야 되고 간판도 바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따로 제안을 안 한 거거든. 그런데 할 때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같이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바꿀 건데 또 나중에 개정한다면 또 바뀌야 되잖아. 지금 반론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얘기거든.

○**김용남 위원** 아니, 말씀은 맞아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도립, 뭐 이런 거까지 사실은 한꺼번에 바뀌야 되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한꺼번에 바뀌어야지, 이거를.

○**환경부차관 정연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환경부차관 정연만** 상당히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그 지정을, 세웠다는 개념을 ‘립’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위법을 하면 국가 지정 국립공원, 그다음에 도 지정 공원이 됩니다. 그게 우리 한국말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번역을 할 때 도 지정할 때 도 지정 공원 이렇게 길어지니까 ‘립’ 자로 하면 도립·군립 다 되고 미국도, 외국나라에서 할 때 도 국가 지정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주립공원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지정으로 하게 되면 명칭을 좀 고민을 해서 약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명칭 문제는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봉홍 위원** ‘국가’가 되면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립’ 자가 지금 거의 형식화 다 돼 있거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도립공원·시립공원……

○**우원식 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김용남 위원**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소위원장 권성동** 일리는 있는 거 같은데……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그 립이 세웠다는 뜻……

○**소위원장 권성동** 하여튼 좀 더 검토해서 도립·시립·군립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걸로……

○**우원식 위원** 도공원·군공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시공원.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시공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 국립공원은 국가 소유, 그러니까 국가 소유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좀 그런 건 맞는데……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공원 안에 있는 사람과 생명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덜

들어간 거거든. 원래 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거기에 있는 생명까지를 포함해서, 사람의 권리까지를 포함해서 있는 거를 국가가 이렇게 지정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국가가 소유한 국가가 세운 공원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의 가치라든가 이런 게 훨씬 뒤쳐져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점까지를 우리가 명칭에 포함을 시키면 국가공원이 맞는 개념이고 실체에도 맞고 또 거기에 국가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이나 이런 거를 함부로 해칠 수 없다는 그런 미래가치까지 포함하면 국가공원이 맞는 거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하여튼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우원식 위원** ‘립’ 자에는 소유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4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의견 듣고 가는 거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일단 두 개 다 했으니까 두 개 다 검토하고……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나머지 조문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뒷부분?

○**소위원장 권성동** 다른 부분 뭐 문제 있는 거 있어요?

○**은수미 위원** 아니, 저도 하나 질의를 할 게 있어서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47쪽에 다른 부분은 다……

한 가지, 9조8호 부분을 좀 수정했는데요 그 부분만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연공원의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한 기후변화 저감·적응 부분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9조8호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어떻습니까?

○**은수미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할 게 있어서……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잠깐만요.

차관님,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검토보고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은수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수미 위원 저는 그것만 좀 질의……

51쪽에 보시면 토지의 매입 등(안 제19조)인데, 그래서 52쪽을 보시면 토지의 매입 등에 공단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냥 해서 매입·매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다른 공단도 자산의 매입·매각에 대해 이런 자율성을 주는 지,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좀……

○환경부차관 정연만 다른 데도 이런……

○은수미 위원 최소한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무리 국립……

○환경부차관 정연만 다른 데도 공단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라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대개 공단이 사업계획할 때하고 예산 편성할 때에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또 기재부의 승인을 주로 많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같은 것들 다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아도 당연히……

○환경부차관 정연만 법률은 특별하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환경공단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다른 데도 이렇게 뭐 협의할 때에 협의한다는 조항들 저희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무자들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그리고 토지는 공원 관리를 위해서 한 토지는 아니고요 공단 자체의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공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지요. ‘공단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니까 설립목적이 지금, 목적하고 사업이 이렇게 커졌는데……

○환경부공원생태과 최선두 공공기관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각하는 것은 저희 법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서 기재부 심의라든지 환경부장관의, 소관 장관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일반법을 적용해도 충분히 그런 문제들은……

○은수미 위원 충분히 가능할 거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게 다른 또 기관에, 동등한 기관에 이 조항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조항을 갖추는 것이 맞다 해서……

○은수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이 국립공원공단법안에 대해서 명칭을 국가공원으로 하느냐 국립공원으로 하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는데 갑작스러운 제안이어서 우리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통과를 시키고……

○최봉홍 위원 통과시키고 가십시오.

○소위원장 권성동 예, 통과시키고……

○우원식 위원 어떻게, 어떤 게 좋으세요? 그러면 명칭을 바꾸는 거 제가 법안을 낼 생각인데 같이 검토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내시고 자연공원법에……

○환경부차관 정연만 명칭에는 지금 되면……

잠시만 제가 실무자, 3분만 주십시오.

○우원식 위원 아니, 그렇게 어려울 거 같지 않아.

○환경부차관 정연만 차라리 제가 보기에 그런 국가 비용을 줄이려면 이런 게 낫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이번에 이름을 바꾸지 말고 이름은 그대로 쓰고 법은 하고. 말씀하신 것이 되면 지금 이게 자연공원법도 바뀌야 되고 다 바뀌야 돼요, 명칭 전체를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요.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야 돼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그것도 개정하고 또 다른 데도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칭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쓰고 지금 공단은 ‘관리’ 자를 뺐지 않습니까? 빼지 말고 그대로 뒀다가, 왜냐하면 이것 빼면 이것 때문에 또 다 고쳐야 되거든요. 고치고 또 발의하시면 또 고쳐야 되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명칭을 쓰고 법은 그대로 가고. 그러면 나중에 ‘국가’로 할지, 전체적으로 다 바뀌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름은 그냥 하고?  
 ○우원식 위원 그러면 법안을 따로 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따로, 예.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려면 더 저희들 다 바뀌어야 되니까.  
 ○우원식 위원 명칭만 떼고 나머지는 통과시키고.  
 ○장하나 위원 좋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원식 위원님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내가 옛날부터 생각한 건데 그것 때문에 돈 쓰자고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안을 안 냈다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하기는 좀…… 왜냐하면 공론도 좀 거치고 이래야 되니까.  
 ○우원식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권성동 자, 그러면 제목을 국립공원 관리공단법안으로?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냥 그대로, ‘국립공원관리공단법안’으로 수정을 하고 안에 내용도 ‘국립공원공단’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국립공원공단법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67쪽입니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심사경과,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69쪽 조문별 검토보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로 한 조문씩 제가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공원 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공원시설계획의 결정이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공원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실효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연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연공원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며 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차관님.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 관리하다 보니까 행위 결정에 몇십 년씩 가는 문제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조치하다 보니까 소송이 걸려서 딱 법에 명시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다음은 71쪽입니다.  
 공원해상휴양지구 신설 사항입니다.  
 자연공원 용도지구에 해상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 해안 및 섬지역은 대부분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해당하고, 동 지역에서는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공원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난개발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안 및 섬지역 중에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을 공원해상휴양지구로 지정을 하여 숙박시설과 해상·해안공원의 특성에 맞는 휴양·체험시설을 집적화함으로써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명품 휴양·체험지구로 발전시키고,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원해상휴양지구의 경우에는 기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추가해서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기만 하면 공원시설의 설치, 공원사업 그리고 수상레저활동 관련 행위, 시설 등이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오히려 공원시설의 과다한 설치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역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저는 대체토론에 나온 것처럼 이미 이것도 대체토론이나, 얘기를 했고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른 위원님들……

이것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차관님 한번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것 최근에 해상 쪽에 탐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지역에서도 그 문제에 불만을 많이 제기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막 난립되어 있고 시설도 민박 식으로 해서 그냥 기존에 있던 것 개조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지역은 지역대로 불만이 많고 탐방로 오는 탐방객도 불만이 많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난개발에 따른 것이 공원의 이미지도 더 나쁘고 국가적으로도 안 맞고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정하게 구역을 설정해서 이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하게 이렇게 해야 오수든 뭐든 다 관리 가능하게 되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국립공원을 탐방하는데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 아니냐, 그런 고충에 의해서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정부입법 취지가 타당해 보이는데. 지금같이 시행하면 난개발이 촉진돼 가지고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서 좀 더 집단화하는 것이 좋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은수미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대체토론에도 나오지만 만약 그런 취지를 하려면 ‘기존의 행위를 어떻게 금지를 하고 새로운 행위를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기존 공원자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추가해서 뭐뭐 뭐를 더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할 때 ‘다만 뭐뭐뭐뭐뭐를 더하라’라고 하면서 난개발을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지금도 수상이나 해양, 섬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행위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범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인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그러면 또 대통령령으로 환경부는 뭘 정할 건지, ‘일시적인 수상레저활동 관련’ 그러면 상시적인, 일시적인 수상레저활동 관련 행위 및 시설은……

이게 뭡니까? 일시적인 수상레저활동이라는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다 상시적으로 탐방객을 받을 것을 설치해 놓을 건데 일시적인 수상레저활동, 그러니까 탐방객들이 와서 1년 내내 거기서 한다는 게 아니라 시설은 다 돼 있고, 이 사람들이 한두 시간 하겠지요. 그것을 무슨 일시적인 수상레저활동 관련 행위 및 시설……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다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요즘은 탐방 조차도 환경훼손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추세인데 저는 이것은 참 곤란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위원님, 일시적인 레저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여름에 수상레저활동, 예를 들면 공원시설에 수상레저기구 계류장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법상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매표장, 대여, 강습하는 것들은 대개 계절별로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의견 들어 보고 말씀하세요, 본인 얘기만 말씀하지 마시고.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의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이게 정부 설명을 듣다 보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돌아서 생각하면…… 그 맞는 얘기 말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얘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통제하면서 그것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각이 안 오니까, 좋은 얘기만 듣고 했다가는 나머지 구멍 뚫리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이런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의심부터 하게 되거든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73쪽에 보시면 공원시설들이 죽 대거 열거가 돼 있고요. 상당수가

공원시설로 현재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허용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가 말씀드리는 일시적인 시설들이 허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 이런 시설들도 그냥 다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다 상세히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중에 일부가 허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원위원회라는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통제 장치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어떤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나 놀이시설이나 등등이 어떤 법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난개발되고 또 여러 가지 주변 경관도 훼손하고 오히려 그게 좋지 않으니깐 더 좋게 정비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이 법을 내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다가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것, 우려스러운 것,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제거하겠다는 거냐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난개발됐던 놀이시설·숙박시설·상업시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지, 그리고 좋은 시설을 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떻게 제거하면서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깐 다 풀겠다는 쪽으로밖에 이해를 안 하잖아요.

**○환경부공원생태과 최선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구역 내에서 행위허가가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건물의 신축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자연공원법상에서 거의 다 막아져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어서 탐방객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우리가 짓지 못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상레저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도 사실은 현재 법상으로는 허용이 못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 환경지구 내에서 일반적으로 풀어 버리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직접 하면 공원 이용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관리

하는 데 훨씬 더 이익이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에도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규모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이라는 하위법령에서 소규모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개별 시설의 입지를 600㎡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대규모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런 우려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공원해상휴양지구로 이래 가지고 딱 이래 되면 전부 지방자치체마다 만들어 가지고 난개발이 될 건데 그것을 이겨 낼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그래서 이것은 휴양지구로 지구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국립공원공단하고 함께해서 전체를……

**○최봉홍 위원** 지구 지정하려면 경관이 좋은 데는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차지할 것이고 작은 데는 엉망이 될 거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것은 대기업이 들어오는 데는 아니고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사전에 저희가 다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봉홍 위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게 없다 아닙니까?

**○이인영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일단 받는 느낌이 일단 풀고 보자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지요.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지요.

**○최봉홍 위원** 이것 수상레저 안 정하고 임시로 하는 이런 것도 해 놓으면 여름철 한철 하다 가 버리면 쳐다보지도 안 하고 엉망 돼 버린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그 정도 논의하고 시간 관계상 보류하고 3항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가받은 사업 시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인근 주민 편의 제고 측면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2호 카목에서 허용되는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정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진료시설·탈의시설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차관.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것은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두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진료나 탈의,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법 해석을 하면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정의견 수용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수정한 의견……

○소위원장 권성동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면 79쪽……

○은수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동의가 안 돼서요.

78쪽을 보시면 신설된 조항에 카, 이렇게 하면 ‘해안 및 섬지역에도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인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플러스 관리사무소·진료시설·탈의시설 등을 더 하게 하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은수미 위원 아니, 탐방객에게,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정안.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은수미 위원 그러면 결국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만 동의가 되면 기존에 없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행위가 다 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해석은 법상으로 그렇게 가능한데 이것을 만든 취지는……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업무 행위를 확대하신다는 의혹이 있으니 제 생각에는 이런 법을 통과를 시키시려면 실제로 객관적 자료를 가져오셔야 돼요.

이게 그렇다라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믿어라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지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필요하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여기에 보면 처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했던 것에서 행정실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진료·탈의 시설 들어갔지 않습니까?

○은수미 위원 아니, 개정안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라는 것에 충족하면 그것이 수정안이든 개정안이든……

수정의견은 대통령령 플러스알파고 개정안은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신설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탐방객에 이런 법안을, 어쨌든 행위를 확대시키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행위를 확대시키는 행위를 하시려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로 하고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 얘기를 저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추상적인 조문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면, 모든 행위가 탐방객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지요.

○김용남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은수미 위원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꽤 많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기본 취지는 하절기라든지 탐방객이 몰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도 이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탐방객들이 와서 실제로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 자체도 못하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은수미 위원 아니, 관리사무소·진료시설·탈의시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개정안에 들어있었던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아니요, 안 들어 있었는데……

○은수미 위원 아니요, 개정안에 그렇게 내신 것 아니에요, 처음에?

○김용남 위원 아니지요. 수정의견이지, 그건.

○환경부차관 정연만 처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구체성이 없다 그래서……

○은수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관리사무소·진료시설·탈의시설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게 모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사무소나 진료시설이나 탈의시설 정도가 필요하다 해 놓고……

○소위원장 권성동 자,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거기에 플러스알파까지를 지금 해 놓으시는 법안이라는 거지요.

○김용남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예를 들어서, 모든 설치 가능한 시설을 법률에 다 나열할 수는 없는 거고 처음에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나 진료시설, 탈의시설 및’ 그러니까 그와 같이 탐방객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수정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자연공원법을 보면 이 용도지구에 있어서 뭐랄까요, 이게 공원자연보전지구하고 지금 앞서 해상공원과 같은 완충 지역이 없어요, 보니까. 공원해상휴양지구와 같은 어떤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탐방객들에 대해서 편의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완충지역이 없고 지금 용도 지역 구분을 보면 공원자연보전지구 그리고 공원자연환경지구 그리고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전이라는 의미에서는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놓으니까 무허가시설이 행락철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게, 지금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어떤 필요한 용도지구가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 온 것 같은데 처음에 나온 개정안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시로서, 이런 진료시설이나 이런 것을 예시로 들므로 인해서 앞으로 제정될 대통령령에 있어서의 어떤 범위를 설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수정의견 정도, 관리사무소나 진료시설, 탈의시설은 이게 행락철에 없을 수

는 없는 시설이고 기존에 지금 다 무허가로 설치 되던 시설이기 때문에 수정의견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공원지역의 보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권성동 아까 말씀 많이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위원장님, 은수미 위원님께서 ‘탈의시설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하니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설 등’으로 바꾸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예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예시입니다.

○김용남 위원 탈의시설 등.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우원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게 막연하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러니까 ‘등’으로…… 사실 이 취지입니다. 이런 시설들만 넣겠다는 취지거든요.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런데 법률에 어떻게 다 나열을 하겠어요.

○장하나 위원 표현을 ‘등’으로 하면……

○은수미 위원 아니, 예시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희가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이게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은수미 위원 아니, 지역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게 우도, 울릉도, 홍도 다 보세요. 가보세요, 이런 게 없는지. 지금 우도가……

○이인영 위원 그런 데는 되어 있는 데고, 지금 떠오르는 데는 다 되어 있는 데지.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떠오르는 데…… 도대체 어디에다 이것을 집어넣으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백도? 거제도? 도대체 어디. 이게 거의 민원으로 보여지는데 어디…… 도대체, 왜냐하면 요즘에는 탐방객의 편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자연환경 훼손의 문제도 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우리 담당……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부공원생태과장 유태철 공원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일반 해수욕장 주변에 공원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 실제 먹을 수 있는 지역이나 간이시설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수미 위원 어디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환경부공원생태과장 유태철 저희 섬 같은 데 보면……

○은수미 위원 아니, 섬을 수없이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섬에 이게 없는 경우 못 봤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자, 은수미 위원님, 일단 저 설명을 듣고 나면 좀 말씀하세요, 중간 중간 끊지 말고.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어디.

○환경부공원생태과장 유태철 시목해수욕장도 지난번에 한번 가본 데도 그렇고……

○은수미 위원 시목해수욕장이 어디에 있는……

○환경부공원생태과장 유태철 도초도에 있습니다. 다도해국립공원.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 안에, 저 끝에 있는 거기……

○환경부공원생태과장 유태철 예.

○은수미 위원 그다음에 또요.

○환경부공원생태과장 유태철 그다음에 또 상주해수욕장이나 그런 데……

○은수미 위원 상주해수욕장은 또 어디에 있어요?

○환경부공원생태과장 유태철 남해……

○은수미 위원 남해, 그리고요?

○환경부공원생태과장 유태철 그리고 일반 해수욕장 주변에……

○우원식 위원 거기 한번 가보고 정합시다.

○은수미 위원 예, 가보고 정해요. 저는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소위원장 권성동 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고 이 법안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것 아니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위원님, 이 법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 자연공원 개정법이.

○소위원장 권성동 뭐가 연계가 되어 있어?

연계되어 있어요, 수석?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규정을 여기서 삭제하고 앞에서 심사한 법에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새로 추가하는 것 말고 삭제해야 되는 규정만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러면 이관하는 부분만 수정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권성동 앞에 통과시켰으니까 이관해서 삭제하는 부분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위원장님, 의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보고를 하시라니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아니, 이관하는 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위원장 권성동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인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야지.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안을?

○이인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국립공원법으로 이관하는 조항이 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야지 그것을 그냥……

○소위원장 권성동 삭제하는 것이 몇 페이지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03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3쪽의 제6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44조~69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이 부분만 수용을 해서 일단 통과를 시키고……

수석님, 나머지 법안은, 일부는 통과시키고 법안의 일부를 보류시킬 수 있나요? 계속 심사할 수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것은 안 됩니다. 일단 그 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고요. 정부에서 다시 별도로 법안을 발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갈 경우에는 대안을 채택하면 기존 발의 법안은 계속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 의결이 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법도 이번에 통과를 안 시키겠습니다. 일단 소위는 통과했는데 소위에서 보류해 놓고 한 번 더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를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기회에 논의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도저히 안 된

다는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다음 기회에 같이 우리 전체회의에 상정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법도 전체회의에 보내지 마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이인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립공원관리공단 법안이 이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렇지요. 제정법이지.

○이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조심사 한 것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제정법이니까 조문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대체적으로……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생략하고 되고.

○이인영 위원 그것은 하여간 우리가 의결하는 절차는 형식적으로라도 밟고 그런 다음에 전체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더라도 그 수준에서 놔줘야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권성동 이미 의결을 해 버려서……

○이인영 위원 그래도 보완이라도 해야……

○소위원장 권성동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보완하면 되니까. 꼭 여기에서 안 해도 되니까. 여기에서 하거나 상임위에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자연공원법 한 번 더 정리한 다음에 둘이 묶어서 갈 때 완전해지는 거니까 일단 보류하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자, 그러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 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20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9항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09쪽이 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일 날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정기국회 때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었던 사

항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학물질사고가 대형사고로 확대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난안전관리계획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존의 재난대응체계에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난 예방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수습은 국가안전처가 모든 관련 부처를 통괄해서 총지휘토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입장.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은 이게 지금 재난안전관리기본법도 생기고 해서 이것을 다 통합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학 사고도 그 재난 유형 중에 하나로 들어 있고 화학 사고 담당하는 환경부지만 저희 국가 전체 총괄적으로는 안전처가 총괄하는, 그렇게 정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쪼개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말씀도 하셨다고 그래서 재난법에 따른 지역대응체계와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조례에서 안을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것은 같이 좀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진척을 시키기 위해 제 말씀은 어쨌든 초동 대처,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되든 간에 화학 사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대처잖아요. 초동 대처를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력을 집중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식이 어렵다면 조례로서 사실은 지자체가 초동 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유기적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안전처나 이러한 것처럼 그냥 컨트롤타워인지 아닌지도 요즘 제가 안전특위에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시기라서 그래서

지자체 조례로 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진행 경과를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나정균** 지자체하고 저희가 조례 표준안은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지자체하고 협의를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가 별도 간담회를 하거나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좀 추가적인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협의는 못 한 상태입니다.

○**은수미 위원** 아직 지자체하고 협의를 못 했다고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나정균** 예.

○**은수미 위원** 아니, 이것은 왜냐하면 이번에 메르스 사태 같은 것을 봐도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얼마나 조율을 잘해서 초동 대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놓쳤다고요.

화학물질 사고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꼭 진척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실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은수미 위원** 아니, 조례로 진척되는 내용을 보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화학사고를 포함해서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 이 중으로 이렇게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27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황주홍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4월 27일 날 저희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합의된 사항은 가축분뇨 연료화의 기준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 신설하는 부분, 그리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를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부분과 결격사유 정비하는 부분, 그리고 퇴비·액비 살포자가 공공수역을 오염시켰을 경우 처벌할 근거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질소와 인을 회수하는 시설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적 검증이 부족한 질소와 인 회수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경계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토록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서, 1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수정의견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환경부 측과 문안을 다시 조정해 봤습니다.

155쪽입니다.

위탁사육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유예 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예외를 허용하는 데 대한 문제점과 여·야·정 FTA 협의회 발표 사항에 대해서 경과 및 효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질소와 인을 회수하는 시설을 추가하는 이 안에 대해서 환경부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는 반대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정부안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환경부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우원식 위원** 이걸 그래도 설치를 해야지요. ‘과학기술적인 검증이 부족하므로 계속 검토하겠다’,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4대강 사업 하면서 상류 쪽의 질소·인이 그래도 줄었다고 한 게 이런 시설을 해서 그래도 좀 줄은 건데.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 측에서는 이런 기술을 인정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 기술이 실증화도 안 된 걸 법에 넣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우려점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R&D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검증되고 나서 법제화를 하는 것이 맞다는,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용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은수미 위원**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기술개발도……

○**소위원장 권성동** 지금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질소·인을 회수하는 시설이 포함 안 되어 있나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예, 지금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인 제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질소는 잘 제거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기술로?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예, 현재 사실은 이게 경제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광석 같은 경우는 귀해서 조금 외국에도 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질소 같은 경우는 좀 드문 시설이라서……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우원식 위원** 아니, 결국 분뇨에서 나오는 게 질소·인인데 질소·인을 못 잡으면 하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생기잖아요, 녹조도 생기고 다 그런 거잖아요.

바다로 가면 적조가 생기고 그러는 건데, 결국 그거를 얼마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완벽하게는 잡지 못해도 그래도 잡는 기술이 있어서…… 4대강 사업에서 물을 막았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질소·인이 줄어들었다 이

거 아니에요, 중상류 지역에서.

그런데 여기에다 질소·인 제거 시설 추가는 과학적인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제화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이거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이거는 소위 점오염원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곳 아니냐는 말이에요. 농지 같은 거는 비점오염원이니까 잡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발생지에서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인데……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이거……

○**김용남 위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질소를 회수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면, 쉽게 얘기하면 질소를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김용남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면 오히려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자원화를 안 할 것 아니에요, 돈이 비싸게 들면?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이거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 법상으로 처리장에서의 질소·인은 법정 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해도 대규모로 발생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빼도 자원화할 수 있는 여지가,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거를 자원화하겠다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이 얘기했듯이 인은 가격이 되니까 좀 더 기술이 발달돼 있고 질소는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그런 기술을 법에서 기술로 인정해 주면 그게 활성화될 것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정부로 봐서는 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경제성이 있는 업계가 법적 기준을 준수해도 하나를 더 뽑아내니까 법 이전에 경제성 원리에 의해서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취지고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하신, 그 기술들이 시장화가 안 되어 있는데 막 인정해 가지고 문제를 좀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또 그거를 빌미로 정부에 예산 요구를 추가로 하는 빌미를 주지 않느냐 이런 우려점이 있으셔서, 그러면 저희들이 기술이 좀 더 일반화되고 난 이후에 법제화하는 것이 안정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 환경부 입장에서야 인정해 주고, 시장에

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걱정들을 하시니까 그러한 여지를 없애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우리는 질소·인을 회수하는 시설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 다른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에 대해서 수석이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환경부는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는 수용하고,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김용남 위원 저는 이거 현실성이 있을까요? 저는 현실성에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권성동 현실성은 없지요. 이 규정이 있으나 없으나 인접 자치단체에 대해서 언제든지 공문 보내서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협의하자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있다고 해 가지고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데 그런 취지는 있기는 있는데 권익위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다고 권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150페이지 위에 보시면……

○소위원장 권성동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인데……

○김용남 위원 있으나 마나 한 거고, 결국에 환경부만 더 골치 아파질 것 같은데, 뭐 알아서 하세요. 민원에만 더 시달릴 것 같은데……

○환경부차관 정연만 맞습니다. 저희들은 안 해도……

○이인영 위원 그래도 비법적 분쟁의 소지를 법적 분쟁의 여지로 끌어넣는 게 낫지 않나요?

○소위원장 권성동 법적 분쟁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벌 유예 특례는 지난번에 제가 이 법 취지 얘기 때 반대했는데, 합의서를 보니까 여야 대표가 다 합의하고 또 정부까지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반대했던 의견을 철회하고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화시설 이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

으십니까?

○우원식 위원 뭐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데, 나는 환경법 이렇게 죽 하면서 규제를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법이 하나가 없어요. 뭘 어떻게 좀 풀자라는 법밖에 없어. 나는 환경부가 왜 이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거 환경부 법이 아니에요.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가 각종 법에 대한 태도가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까다롭고 ‘풀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환경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안 내면, 모든 법이라는 게 한 발자국도 나가기 어려운데 도대체 이게…… 질소·인 문제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이 유일하게 강조하던 게 ‘중상류 부분의 질소·인이 없어지고, 그런 시설 설치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질소·인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다’ 또 이런 얘기하고, 앞에서 또 다 마찬가지로요.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환경부는 찬성을 했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저희는 찬성을 하는데요, 국회의원님들 입장을 한 다음에 하겠다는 거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찬성을 하는데 반대하니깐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거지.

○우원식 위원 그러면 환경부가 왜 적극적으로 설득을 못 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처리기준 같으면 저희들이 절대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간업자가 처리하는 기술을 인정해 달라는 거니까 좀 차원이 다른 거지요.

○김용남 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설득 안 되는데 우리……

○우원식 위원 아니요, 우리는 강화하자 쪽의 이야기를 잡고 가는 거지요. 나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 ‘자신 있습니다’ 그러고 해야지……

○소위원장 권성동 자,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과 11항, 황주홍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37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2항 주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을 상정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8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법안의 주요 내용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4월 27일 날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심사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근거 법률인 제정안을 정부가 발의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동 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해서 제출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의견 조회 결과, 그 아래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문별 검토는 정부 측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지금은 상임이사가 2명인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이걸 왜 갑자기 4명으로 증가를 시키려고 그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수용을 안 하는……

○**김용남 위원** 그런데 이게 독립된 법이 필요해요?

○**이인영 위원** 아니, 동문서답하지 말고 증원을 왜 하려고 하느냐고 묻는 데 대해서 ‘기재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게 어디 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은 증원하는 거는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전

에 저희 환기법에서 독립되어 있는 이유가 사업 범위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인원을 해서, 위원님께서 좀 늘리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활성화 안 된다 이러는데, 기재부는, 정부가 인원을 늘리는 거는 절대 반대인데 현재 2인을 그대로 가져가고 추후에 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는 단호해서 정부 내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직원이 몇 명 늘었습니까, 처음 상임이사 2명 할 때보다? 총 몇 명이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번에는 늘리는 건 없고, 전체 209명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직원이 증원된 건 없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느는 건 없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인원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상임이사 2인 증원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상임이사를 개정안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가 제시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수용합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위원장님, 뒤에 조문별 검토가 따로 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지난번에 검토 안 했다, 조문별 검토?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안 했어요? 하세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러면 조문별로 보고를 드릴까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 조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191쪽 사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원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등 총 26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호는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2호는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효용화 촉진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호와 2호는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입법의 경제성을 위해서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호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친환경제품 보급 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친환경제품' 문구는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녹색제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호는 유망 환경산업의 발굴·지원,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4호는 환경기술·환경시설·환경상품·환경금융 및 환경 관련 컨설팅 등 환경 서비스의 수요 촉진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13호와 14호도 유사한 조항이라고 보아서 통합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5호는 환경기술의 국외 현지 실용화 지원 및 조사·연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5호에서 환경산업·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5호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아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8호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조사·연구를, 제23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 조문도 마찬가지로 유사하다고 보아서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호는 환경기술·환경산업, 녹색경영 및 환경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12호(환경기술 등을 위한 조사·연구)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9호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0호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에 관한 업무에 별도로 반드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서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보입니다.

194쪽입니다.

제21호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10에 의한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그리고 제22호는 토양보전과 관련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이 위임한 사무를 기술원의 고유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또한 해당 사무를 위임한 개별 법률 또는 그 하위 법령을 개정·폐지할 경우에 제정안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개별 법률의 위임사무를 기술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규정, 23호만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서 21호와 22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24호는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너무 포괄적이라고 보아서 법률체계상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환경부……

○환경부차관 정연만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신가요?

○이인영 위원 가습기 빼면 제가 찬성한 이유가 많이 줄어드는데……

○은수미 위원 산자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반대의견이 두 가지잖아요? 현재 현행법으로도 기술원의 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또 다른 사업영역을 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산업 이 법으로 이렇게 제정법으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은 산업부하고 입장이 좀 다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술원이 처음에는 환기법에 의해서 조그맣게 출발했는데 환경부 업역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산하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에 업무가 자꾸 위임이 많이 됩니다. 위임이 되다 보니까 기관이 커지고 업무영역도 넓어지니까 그

법에 두는 것이 맞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산업부는 기존 그 범위에 한정되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업역이 겹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입장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하다가 이것을 산업화시키는 영역으로 환경부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산자부 입장은 산업부문의 경우는 환경부가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고 거기에다 R&D를 지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많이 축소해 오면서 산업적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양자가 이렇게 상호작용이 잘되고 흐름이 원만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환경부가 오히려 환경산업 쪽에만 집중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지금도 법에 환경산업은 저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은수미 위원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작은 법으로 하는데 이것을 제정법으로 만들겠다 함은……

○환경부차관 정연만 제정법의 목적이 산업을 확 키우자는 취지가 아니고 이전에 하지 않던 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권성동 조직법이에요.

○은수미 위원 조직법인데요, 어쨌든 기술원이라는 하나의 기관을, 지금까지도 법에 있었는데 이것을 독립적인 기관에 대한 제정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잖아요? 키워보겠다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앞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원래 자연공원법에 들어 있던 부분을 조직법으로 별도로 분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산업기술원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치근거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독립해서 조직법으로 만들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은수미 위원님, 별도의 조직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은수미 위원 별도로 제정법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것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한 것인지, 기관이 하나 커질 때마다 매번 제정법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물론 그렇지요.

제정법이 없어도 지금 기관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는 없는데……

○은수미 위원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정법을 굳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장황하게 제정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인영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가슴기 얘기한 게 그냥 농담처럼 한 게 아니고, 이전에 환경산업기술원이 있을 때하고 다르게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과학적인 요소에 의해서 새로운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산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의 영역이 확장되고 중요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정신인지는 알겠는데 상징적으로 이런 것을 놔두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을 때하고 달리 커진 것이지요. 이 기관이 담당할 업무라든가 기관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작았던 때하고 달리 커져 있는 것이고, 일종의 성인식처럼 별도의 법을 통해서 그것에 걸맞게 완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큰 취지에서는.

○소위원장 권성동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의 조직법을 만들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만들고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지금 법적근거가 있어 사업하는 부분도 없고 법적근거 없이 사실상 예산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조직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별도의 조직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 굳이 우리가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수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198페이지 임원 구성 등에 대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98쪽 임원 구성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 임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 임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라서 감사 임명 시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수용합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00쪽, 재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17조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 기술원에게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부 외의 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기술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주체는 정부 외에는 없다고 보이므로 “국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9조는 기술원이 기부금품을 받아 별도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 조항은 국가가 설립한 법인이 기부금품을 원칙적으로 모집·접수할 수 없도록 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은 국가가 출연·설립한 법인이 암묵적인 기부 강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부금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품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에서 반드시 규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정안 제22조는 기술원 설립·운영 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수익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특례 요건을 “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라고 추상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적용대상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의 취지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수정의견 수용합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잉여금의 처리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03쪽입니다.

잉여금의 처리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25조는 기술원이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술원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을 기술원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한 이 부분은 결산잉여금의 당해연도 집행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주무부처 승인, 기획재정부 협의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기술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연도”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재정용어인 “회계연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정안 제28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의 기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의 기술원에 대한 보고·검사 대상을 규정과 관련하여 이 중 제3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당연히 감독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제2항은 기술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뚜렷한 실효성 확보 방안이 없기 때문에 시정을 명하는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05쪽입니다.  
 벌칙 및 과태료 규정입니다.  
 제정안 제34조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정안 제35조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유사법률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상한을 500만 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용하시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부칙하고 개정사항은……  
 부칙은 어떻습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환경부, 수용하시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개정사항은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위원장님, 아까 193쪽에서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는 삭제 의견을 냈었는데 이인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살리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론을 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오케이.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주영순 의원이 대표발

의한 한국환경산업기술법안은 위원님들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지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권성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3항에서부터 15항까지 장하나 의원, 전정희 의원,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09쪽이 되겠습니다.  
 212쪽의 법안소위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소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법안으로 동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법안소위에서 2013년부터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평가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부처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고, 지난 5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으로부터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으신 후 심사를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 국장입니다.

별도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연구결과 보고입니다.

1쪽, 경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4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확대 하자는 입법안이 심상정 의원님, 장하나 의원님 그리고 환경부 자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난 2013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등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환노위 등에서 정부 내에 조속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조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조정협의를 총 9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결론을 현행의 제도와 그다음에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리뷰를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 한 후에 평가대상 확대를 논의기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 4월부터 금년 5월, 최종적으로는 6월 5일 날 끝났습니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연구가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 내용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인가,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OECD를 인용해서 환경영향이 큰 전략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최선의 대안 선택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는 9페이지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외국의 전략영향평가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첫째, 외국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서 계획수립 부처가 별도 스크리닝을 해서 결정을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평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리스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범위와 관련해서 외국은 누구나 가능한 반면에 우리는 해당 지역 주민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보공개 범위도 외국은 전 과정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반면에 우리는 일부 자료, 즉 전략영향평가의 스코핑 결과, 그다음에 영향평가서만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협의기관인 환경부의 의견에 대한 반영의무도 외국은 없는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반영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의 역할을 정리를 한다면 우리는 자문·협의 그리고 감독기능까지 있는 반면에 외국은 자문·협의기능만 있다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토대로 대상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대상계획은 현재 94개에 더하여 개발계획에 국토계획, 에너지계획 등 37개 계획을 추가하고 또 환경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관 계획 24개, 그래서 총 152개를 대상계획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상계획이 이렇게 확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제도개선을 같이 제안했습니다.

첫째, 환경부의 자문역할을 명확히 해야 된다. 아울러 계획수립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환경부의 자문역할 명확화 측면에서는 현 평가법 제17조제3항에 우리 환경부장관이 요구한 개입 등의 보완·조정요구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 계획을 수립하는 부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환경부의 협의의견을 미반영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상세한 관련 자료를 평가서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략영향평가서에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공개와 일반 대중의 참여절차를 강화해서 모든 국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 외국처럼 평가 대상에 대한 스크리닝 기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 평가가 힘든 경우에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 사례로 연안통

합관리계획 등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그러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진이 또 조금 더 축소된 대상계획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 94개 중에서 10개는 중복이 있기 때문에 뺀다, 그래서 84개. 그리고 환경부가 발의했던 50개 계획 중에 17개, 환경부 자체 계획 13개 해서 총 114개의 계획을 제도개선이 없이도 추가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 선정 예시를 보시면,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교통계획 분야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에너지계획 분야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자원 분야에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주관으로 6월 달부터 제도개선 방안 부처협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 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기재부가 주관해서 해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처음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관계부처가 4개 부처인데 국무조정실에서 회의해서 사실은 이것은 경제부총리가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내려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연구는 공동으로 했나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예, 연구는 4개 부처 공동입니다.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산자부…… 아, 해수부까지 같이 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국무조정실에서 하려면 국무조정실에서 하든지 환경부에서 하려면 환경부에서 해야지 왜 기재부가 이것을……

○**소위원장 권성동** 일단 정부의 단일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부처 의견 조정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해 주시바랍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6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게 2권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권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 지난번에 공청회했던 그 사안이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공청회지요? 지난번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한 번 했고 오늘 처음으로 본격적인 심사 하는데,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미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조문별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정의 조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의 조항 안 제2조제2호 중에서 ‘배출시설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7개 개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10개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5년 1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 7월부터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시에 비산배출시설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등’의 정의에 이를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환경부,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장님 이것은 한번, 조문도 중요하지만 공청회하고 그동안에 문제 제기됐던 사안들이 주 쟁점 사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논의에서도 그 쟁점 사안이 핵심이 될 텐데, 위원님들께 먼저 쟁점 사안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만 되면 나머지 조문은 법리상으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청회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쟁점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이것 정리만 끝나시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담당 국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환경정책관 박광석** 박광석 담당 국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쟁점 일곱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법률안 주요 내용은 그림에…… 전체적 통합 관리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맞춤형 관리를 한다, 배출영향분석을 통해서 사업장별로 허가배출 기준을 도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금은 허가가 영구적이지만 5년에서 8년 주기로 재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통해서 기술정보 활용 등을 통한 여러 가지 투명하고 과학적인 허가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통합 허가의 대상과 관련해서 법안 제6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상 사업장이 현재 대기 또는 수질의 1~2종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대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만 공청회 때 위원님들께서 작은 업종들이 문제가 많을 수 있으니까 3~5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1·2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공청회에서 진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했을 때 소규모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관리 특성, 역량 등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는 통합 허가는 대형 사업장 위주로 하고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법, 수질법과 같은 개별법을 통해서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시범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허가 조건 재검토 같은

경우에 허가 조건이나 배출 기준의 검토 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공청회 때 말씀하신 것은 녹색기업 정기점검 면제로 인한 문제를 감안했을 경우에 재검토 주기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허가 조건의 변경·검토와 관련된 재검토하고 지도점검은 조금 다른, 별개로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재검토 주기 연장 부분은 규정을 존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적가용기법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 24조에 최적가용기법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적가용기법이 어떤 특정한 기술로 될 경우에는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의견은 최적가용기법은 어떤 특정화된 기술이나 기법이 아니고 현재 검증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기술 작업반에도 업종별로 산업계 전문가라든가 관련자들이 참여해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공청회 때 별도의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의 중앙환경정책위원회—정책기본법에 있습니다만—산하에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독립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 내에서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최적가용기법과 관련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적가용기법 관련 조항에 최대배출기준이라든지 또 실무 작업반 구성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

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 조항, 특히 산자부와 협의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실효성 저하 우려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의견은 법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배출기준 설정 등에 관계부처 합의는 정부 내 절차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처 협의할 때는 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되지 않는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방법·절차와 관련해서 관련 정보를 제27조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때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사례에 따라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필요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공청회에서 제기하신 말씀대로 현재 되어 있는 27조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한의 위임·위탁 관련 조항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권한 위임 조항에서 '시·도지사' 삭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하고 환경관리 역량 배양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관련 내용들을 하위법령 제정할 때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는 저희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법 마련하고 이해 관계자 설득하고 협의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검토사항을 보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님!

○장하나 위원 공청회 때 3·4·5종 사업장 다

좀 걱정하셨잖아요. 거기 더 문제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바로 즉시 도입은 어렵겠지만 그중에 혹시 문제가 주로 되고 있는 업종이랄까, 아니면 주로 문제가 재발을 했던 지역이랄까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갑자기 도입하면 충격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고민은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허가제도를 가지고 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외국에도 보시면 소규모 업종은 통합 이렇게 허가를 하지 않고 개별로 해 가지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게 이런 한계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소규모는 입지규제라든지 어떤 그런 면 단위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하나 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다 통합해야 되고, 공청회 때 기억이 다른 체계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다 같은 체계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기억이 나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을 한번 드려본 것, 몇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해 보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법 취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1·2종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좀 소규모까지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는 지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개별 허가 시스템을 좀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입지 관계법을, 지금 국토부하고도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물대리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그런 관련법 체계에서 같이 입지규제를 하지 않으면 개별 허가제도에서 쉽지는 않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풀어놔 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사후에 하기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 이 제도 하면서 그런 고민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하나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젠가는 3·4·5종으로도 확대한다는 취지는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끝까지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갈 생각입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 환경부에서는 1·2종 해서 효과를 거둔다면 3·4·5종도 일부 업종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견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도 중간 과정에서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원식 위원** 그것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제기했던 것 있잖아요? 기초화학물질 제조, 기타 화학물질 제조, 섬유제품 염색, 석유정제품 제조 이런 것, 1·2종은 아니지만 그 위험의 정도랄까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것, 그것 포함시키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특정업종을 포함시키는 문제지 않습니까? 특정업종 중에서도, 특종업종을 넣으면 조그마한 5종까지 다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한 부분이 업종에 따라서는 작업환경같이 영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관계 부처에서 상당히 좀 현장조사도 해 보고 협의가 추가로 되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시범사업 같은 걸 좀 해 본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법안에 지금 이번 심의에서 넣어 가지고 가는 거는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정부 법안대로 1·2종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우원식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막연하게 할 일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슨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서 그때까지는 하겠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형태로 규율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가야지 그냥 향후에 실태조사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사업, 거물대리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입지법하고 입지법 제한 문제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풀어서 역으로 저희들은 오히려 어떤 계획관리지역 같은 게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 조례로서 조닝을 해 가지고 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아예 못 하는 좀 강력한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관련 부처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서 저희도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역별로 이런 계획이 없는 지역에는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TF를 만들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안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여기 기초화학물질 제조, 기타 화학제품 제조, 이런 건 업체 수도 몇 개 안 되는데 뭘……

○**환경부차관 정연만** 화학제품의 업체 수가 의외로 많지요.

○**우원식 위원** 사업장 수 97개네요. 84개고.

누가 뭐 다른 대답 없어요? 무슨 개별법으로 한다거나 뭐……

○**환경부차관 정연만** 하려면 앞으로 개별법에서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통합은 전체를 다 묶는 거니까, 말씀하신 거는 대기 쪽에서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대기 관련법에서 허가 체계를 좀, 검토 기능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무슨 개별법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안이나 이렇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일단은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이 시범사업이나 현장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은. 또 달랑 이렇게 해서 뭐 갑작스럽게 만들어 내기는 조금 어렵다는……

○**우원식 위원** 지난번에 공청회 때 그렇게 제기가 돼서 전문가들도 그때 나와서 ‘아, 그거는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럼 무슨 방안을 갖고 오셨어야지.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시라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 해 놓고, 정부 내에서는 앞으로 좀 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 내자 그렇게까지 입장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기업이 영세기업이니까, 3·4·5종이. 워낙 작으니까 이거 문서 작성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그 부분, 지금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세요.

○**환경부환경정책관 박광석**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해야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앞부분에 최대배출허용기준 같은 경우는 산업부뿐만 아니고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금 법에도 주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여기서 최적가용기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최대배출허용기준이요?

○**우원식 위원** 예.

○**환경부차관 정연만** 산업부를 위시한 관련 부처들……

○**우원식 위원**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중기청이라든지 뭐 주로 국토부라든지……

○**우원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작업반 구성에 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또 거쳐요?

그러니까 기술작업반 구성에 관해서는 환경부가 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을 최대배출기준을 정할 때 관계 중앙부처장관과 협의하면 될 일이지요. 이거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좀 그런,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원식 위원** 이중씩이나 해서 뭐해. 하나만 하면 되지.

환경부가 없는 거 같아요, 여기는. 산업부장관만 있지.

○**환경부차관 정연만** 산업부에서는 이게……

○**우원식 위원** 환경부가 세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하라는 거지, 난.

○**소위원장 권성동** 이거 안 하면 부처 협의가 안 되니까……

○**우원식 위원** 부당한 탄압의 고리를 끊고 투쟁을 하세요, 투쟁을.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사실은 고충을 말씀드리면 이 법 자체가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모든 자의적 판단하에서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우원식 위원** 아니, 자의적으로 못 하잖아요. 여기 최대배출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런데 기술검토서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앞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작업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술작업반을 거칠 때에 산업계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어서, 수렴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최종 나온 거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으로 해서 자기들이 번복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게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경부장관이 하는 거고 작업반 구성·운영 결과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다 결론 난 거 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업반의 전문가들이, 좀 그런 데 있는 사람들도 다양하게 들어가야 고르게 판단된다 이런 입장에서……

○**우원식 위원** 그러면 환경부가 얘기하는 거는, 국가 운영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산업부는. 환경부에다가 맡겨 놓으면 뭐가 굉장히 불안한가 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차관이 전혀 불안한 사람이 아닌데.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이 전혀 불안하게 보시지 않는데 산업통상부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소위원장 권성동** 산업부에서는 불안하지, 환경부가.

○**우원식 위원** 뭐가 불안해. 저렇게……

○**소위원장 권성동** 불안하지. 산업 규제한다고 생각하니 불안하지요.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거 하나면 돼요.

○**소위원장 권성동** 우 위원님, 이거 아마 정부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안 해 주면 이 통합법 자체에 대해서 다른 부처에서 반대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통합법을 발족해서 이렇게 통합 관리하는 것이 환경보전에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인 모양이니까……

이것 또 건들면 법사위에 가서 또 문제되고 또 문제되고 해서 그냥 존중해 주고 또 이 법이 필요한 만큼, 이거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도 다 나왔지만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시지요.

○**우원식 위원** 통과시키는 건 좋은데 개별법에서 2종까지 말고 그 밑에 아주 위험해 보이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하시고 개별법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

다 이걸 구체적으로 가져 오시고, 그다음에 최적 가용기법의 최대배출기준 이걸 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걸 너무 과도해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거는 뭐 다른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기술 작업반 구성에 관해서는 산업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형태로, 의무조항이나 이런 걸로 좀 훨씬 완화시키는 쪽으로 하세요. 그리고 환경부 의견이 좀 더 들어가야지.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말씀에 뭐 환경부 입장은……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야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동의를 합시다라는 또 부처 협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한다면 산업부를 좀 이런 정도는 설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소위원장 권성동** 약속 위반이라고 이제 난리 칠 거야, 아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래서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든지 조금 툠다운시키는 걸 한번 산업부를 설득시켜 보도록 그렇게……

○**우원식 위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의견을 들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원식 위원** ‘들을 수 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들을 수 있다’, 산업부가 안 받을 거 같은데, 이거.

○**우원식 위원** 환노위에 가면 위원들이 세서 좀 들어 줘야 된다고……

○**소위원장 권성동** 24조5항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꾸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오케이.

○**우원식 위원** 위원의 의견을 막 완전히 묵살해 버리네.

○**소위원장 권성동** 자, 그렇게 해서 수석전문위원, 축조심의할 테니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우원식 위원**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제가 제기했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하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좋은 안을 내시고.

자, 통과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그러면 14쪽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정의견 아까 얘기했고.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사전협의 사항입니다.

사전협의 제5조1항은 허가, 변경허가 이전에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과 허가배출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전협의 사항 중에 운영계획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설치계획만으로는 허가배출기준 관련 사전협의를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운영계획 사항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자, 환경부.

○**환경부차관 정연만** 검토보고 동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정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6쪽, 통합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내용 측면에서 방금 다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입법적 측면에서 잠깐 한 가지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닌 기존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6조제5항의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 이렇게 같이 다 포함할 필요가 있고요.

6조3항은 허가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6조3항 이후에 이러한 내용이 아홉 차례나 재인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허가조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하 허가조건이라고 한다)’라고 조문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리고 18쪽입니다.

통합허가 관련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허가기준에는 포함되어 있는 환경오염 사고 대책 관련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예, 다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다음, 21쪽입니다.

허가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7조1항에서 허가·변경허가 신청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검토하여야 할 사항 3개의 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7조1항3호는 환경오염사고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후적인 대책 외에도 사전적인 예방대책도 중요하다고 보아서 이를 함께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다음은 23쪽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잠깐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안 제8조2항에서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설정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환경기준 등 4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조2항제3호는 배출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의 오염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설치된 지역의 오염상태를 고려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문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2항에서 오염물질 등을 최대한 배출하더라도 허가배출기준보다 낮게 유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의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배출기준 준수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재검토 주기 연장의 인센티브 부여는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환경부차관 정연만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 앞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5쪽.

○은수미 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한다는 것은 인센티브를 없애겠다는 것……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자구하고 큰 내용은 같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소위원장 권성동 없앤다고 아까 논의된 거예요.

25쪽!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5쪽,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10조1항에서 제정안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별법의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행위 무효는 원래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데 굳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고 표현한 부분도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비산배출시설을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에 추가할 경우에 이 부분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2항에서 같은 조 1항에 따라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별법의 배출허용기준은 제정안의 허가배출기준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 제1항 후단이 아닌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표현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28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오염도 측정 및 개선명령 관련 사항입니다.

13조에서 환경부장관이 시운전기간 종료 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오염물질 등이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는지 여부 등을 측정하고 측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오염도 측정 대상은 시운전 대상시설에 국한되는 것인데 개정안에서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개선명령 등)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 등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개선명령 불이행 시 조업정지 등 처분할 수 있으며,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가 급박할 경우 즉시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환경부장관에게 개선명령을 부여할 경우 긴급한 경우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을 통해서 상황을 전파하고, 그러다 보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어때요? 14조 괜찮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수용합니다.

현행법에도 이렇게, 이게 통합이 안 되면 개별법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견 없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페이지, 배출부과금 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배출부과금, 제15조부터 18조까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조제1항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 및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을 운영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자에게 한정되는데 동 조항에서는 ‘오염물질 등’으로 전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 배출부과금 산정 시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오염물질 등의 종류, 배출기간 및 배출량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기법과 수질법에서는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으로 규정한 ‘자가 측정 여부’,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개별법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제5항에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배출부과금 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기법·수질법과 같이 징수비용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에게는 배출부과금을 미부과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법상 감면대상에 대해 전액 감면하는 경우와 배출부과금 미부과 대상이라도 관련 서류 검증을 통해서 미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미부과는 삭제하고 감면으로 통일해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안 제16조1호 및 2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대기법·수질법에서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내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자 외에 감면대상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개별법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18조에서 배출부과금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징수유예에 따른 배출부과금 체납 발생 시 부과금액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 담보 보전조치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환경부 의견 말씀드립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는데 한 가지, 34쪽 15조6항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 위임이 안 되어 있는, 이 법에 권한을 어느 것을 지자체에 주고 중앙에서 할지 역할 분담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된 상태에서 이 조항을 두게 되면 나중에 논의할 때 ‘이 인허가를 다 지자체에 줘야 되는 게 이미 법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취지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신설된 6항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최봉홍 위원 수용?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환경부 의견대로 삭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수정의견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7쪽, 배출시설 등 방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봉홍 위원 회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검토된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최봉홍 위원 검토됐으면 환경부에서 전문위원의 안을 못 받아들일 것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회의가 더 능률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도 되겠습니까?  
 ○은수미 위원 그래도 이게 제정법인데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권성동 간단하게 하세요, 짧게 짧게. 37쪽.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7쪽은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3항 후단의 시설폐쇄 대상 사업자는 안 8조3항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기 때문에 ‘시설폐쇄’를 ‘허가취소’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의견 없으시면 39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다음은 39쪽, 허가의 취소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22조1항 단서도 ‘시설폐쇄’를 ‘허가취소’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22조제1항에서는 마찬가지로 무허가 위반행위를 처분하기 위해서 사업자 이외에 ‘배출시설 등을 설치·사용하는 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2조제1항에서는 본문의 ‘사용중지 등’에 ‘등’에 어떤 행정처분이 포함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2조제1항2호에서도 무허가로 배출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는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5번과 6번은 자구정리 차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번 안 제22조제2항4호에서 안 제32조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8번도 자구정리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음, 43쪽 과징금.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과징금 관련해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7조에서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는 조업정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중지 처분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항은 아까 정부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환경부차관 정연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아까 4항 그것은 저희 안으로 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것 삭제하고.  
 그다음에 46쪽, 최적가용기법.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이 부분은 내용은 아까 다 논의가 되었고요. 아래 부분의 지원 대상에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있어서 최적가용기법보다 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환경관리기법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리고 49쪽은 아까 논의한 대로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예, 그렇게 하십시오. 50쪽, 실태조사.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위해서 그 사업장 출입할 때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술작업반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리고 사업자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서 사업장 출입 제한을 요청한 기술작업반원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견 없으시면 52쪽 정보공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아까 정부 측에서 보고할 때 이미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조문 수정방향에 대해서 한번, 아까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화평법에 저희들이 했던 그 조항에 준해서 저희들이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27조의2항·3항·4항·5항.

○**소위원장 권성동** 화관법 입법례 참고한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거기 참조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공개 제한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 그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괜찮겠습니까, 화관법 대로 하면?

○**이인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으로?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문제없어 보이니까 5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54쪽,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해서는 앞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예, 56쪽.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56쪽은 별칙조항입니다.

별칙조항은 제정안에는 규정이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별법 수준으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개별법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악취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조업정지 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형량 수준이 과도하게 강화된 경우도 개별법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미 위원** 잠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자체 권한 위임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얘기를 못 들어서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다 그냥 외장창 다시 환수해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법 일단은 통과되기 전까지 하위법 할 때 구체적으로 지방과 중앙에서 하는 역할을 나누자. 그것을 입장 정리를 하고 간다면 이 법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허가에 따른 세부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이 할 분야하고, 지금 다 지방에 위임이나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또 중앙이 권한을 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권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하위법 하기 전까지 입장 정리를 하자,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은수미 위원** 35조는 그대로 둔 상황에서 통고를 시키자는 거네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논의하려고 하면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위원장 권성동** 나중에 사전에 와서 보고하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노위 보고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벌칙은 그렇게 하고요, 과태료하고 부칙하고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과태료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서 12개 위반사항별로 최고 1500만 원 이하부터 최소 200만 원 이하까지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수준인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정의견에 이의 없으시지요, 강화하는 거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부칙은 주로 경과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요.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15시30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7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품의 환경성 관련 부당 표시·광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장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통·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실시 중인 부당 표시·광고 관련 조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조사 외의 조치는 수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조사 등’은 ‘등’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38쪽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에 부당 표시·광고 행위 방지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게 부당 표시·광고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제, 시장조사 등의 업무의 위탁을 위해서 기술원의 사업 범위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동법 제16조의10에 따라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있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안 제5조의3제4항 제12조의2호는 단순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성과 관련 있는 경우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입니다.

제품의 환경성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한 제조업자 등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

거를 신설하고, 부당 표시·광고를 한 제조업자에 대해서 동법에 근거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의13에는 과징금 부과 시에 필요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등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안 제16조의14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서로 목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규제로 보기 어렵고, 각 산업·업종별로 표시·광고 행위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제한하는 입법례가 없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조문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236쪽 수정의견에 대해서 환경부는 의견이……

○환경부차관 정연만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정의견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환경부차관 정연만 수정의견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등’ 자 뺐 겁니다.

○우원식 위원 ‘등’ 자가 중요한데 말이야, ‘등’자를 빼겠다고.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31조가 이게 뭐예요? 조사 등에 관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데 이것 굳이 표시해야 되나? 237쪽에 대해서……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것은 위임·위탁돼 가지고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왜 산업기술원에만 위탁하지?

○환경부차관 정연만 기술원이 지금 이 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부당 표시·광고 이것 지금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거기서 위탁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아까 오전 중에 통과한 것 법률에 한번 찾아봐요, 거기에 이것이 업무에 들어가 있는지.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런 포괄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포괄적으로, 이것은 안 들어가 있고?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될 때 넣어 주는……

○소위원장 권성동 산업기술원에서만 이것 꼭 해야 되나?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것 산하기관에 시킨다면, 산업기술원이 환경마크 제도라든지 친환경제품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 주는 게 맞습니다, 공단은 기술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이의 없으시고요.

238쪽 수정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240쪽은……

○환경부차관 정연만 240쪽 것도 저희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240쪽 보고했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보고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16조의14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우원식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우원식 위원 예.

○소위원장 권성동 이것 우원식 위원님이 내신 법안이지?

○우원식 위원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다음에 24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제조업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당 표시·광고를 한 제조업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벌칙,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중으로 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것은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선 급한 대로 과징금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벌칙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야.

○소위원장 권성동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없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을 그대로 반영, 중복성이 없는……

○은수미 위원 개정안대로 하는 거지요, 개정안 그대로.

○우원식 위원 이것 마지막 것은 원안 통과대로 하면 돼요.

○이인영 위원 이견이 없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견이 있는데?

○소위원장 권성동 의견, 다른 의견, 이견이 아니고 다른 의견.

○우원식 위원 맨 끝에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부과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면 돼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원안대로……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 동물원법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계속)

(15시40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8항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법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창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0항 한정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립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저희 소위

원회에서 심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2일 날 임시국회 제3차 법안소위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동물원법 등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토록 촉구하고,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면 금년 2월 이후 공청회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 간 협의 경과는 2014년 3월 환노위의 부처 간 이견 조정 요청에 따라서 2014년 9월 5일 환경부·해수부·농식품부·산림청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조정한 결과 동·식물원법을 4개 부처가 공동 입법하기로 결정하고, 환경부는 총괄 및 동물원, 산림청은 식물원, 해수부는 수족관을 중심 부처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법률안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 그리고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정부입법을 빨리 국회에 제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게 동물원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식물원 쪽은 워낙 관계부처 간에 입장이 완강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입법을 단기간 내에 합의를 봐서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의견이 서로 많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우선 입법의 필요성부터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또 뭐지요? 조정 협의안 이것은 뭐지요?

**○장하나 위원** 그러면 제가 배포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예, 설명을 해 주세요.

**○장하나 위원** 나눠진 자료는 지금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관련된 법안을 낸 본 위원과 또 존

경하는 양창영 의원님, 한정에 의원님 법안을 세 의원실이 모여서 수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동물공연 등을 금지한 제가 발의한 법안이 사실 조금 많이, 뭐랄까요, 업계에서 라든가 환경부도 지금 수용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세 의원실과 보폭을 맞춰서 많이 수정을 한 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1조부터?

**○소위원장 권성동** 예.

**○장하나 위원** 그러면 앞에 세로로 된 것은 수정된 법조문이고요. 뒤에 가로로 된 것을 보시면 기존의 법안들과 또 수정안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1조는 이 법의 목적인데요. 식물원이 아까 전에 우리 차관님께서 산림청하고 아직 조율이 어렵다고 하였고 한정에 의원님께서 그 점을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이번 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 또는 동물원·수족관을 합친 세 가지에 대해서만 좀 규정을 하고 식물원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는 동물원·수족관 그리고 복합된 형태인 야생동물 복합전시기관 이렇게 세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요.

3조에서는 동물원 허가제를 하자는 게 공청회에서 얘기가 많이 됐는데 업계의 저항이 좀 심하므로 의무등록제라고 해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조, 등록의 취소 부분인데요, 시도지사가 동물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취소할 있다는 내용이고요.

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동물원·수족관 등을 개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 이게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않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6조는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동물원·수족관의 장은 보유생물에 대해 생물종 특성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국가는 서식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하고 동물원은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조에 금지행위가 나오는데요. 야생생물 보호

법 8조에 따른 학대행위, 도구·약물을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광고·전시를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8조는 안전행위에 대한 내용이고요. ‘관리자는 보유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9조는 보유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 기록, 동물복지위원회 개최 회의록 등 기록, 이것을 5년간 보존한다는 내용이고요.

10조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 개방 일수, 관람객 수 이런 등등의 자료를 매년1회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11조는 제6조, 7조에 따른 금지행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이 동물원·수족관 등에 출입검사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2조는 조치명령에 대한 것인데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동물원·수족관 장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필요한 조치 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13조는 생태계교란 방지, 보유생물이 동물원·수족관 외부로 유출되어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4조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동물원·수족관에 대해 보유생물의 적절한 보전, 증식, 질병치료 등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5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훈련할 때 이 동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마지막 16조에 시도지사는 동물원·수족관 등 기록을 취소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뒤에 별칙에 대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물원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가 부처 간에 협의가 어려운 이유로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지금 정부안을 마련 못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방지하기에는 동물원법이 국회에서 많이 숙성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공청회 때 또 여야 위원님들도 동감하신 분들이 많아서 본 위원도 그때 모아진 공감대에서 너무 앞서 나가지 않도록 이러한 수정안을 마련

했던 것입니다.

한번 천천히 좀 읽어봐 주시고 너무 동물원 법안의 처리가 뒤쳐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소위원장 권성동 장하나 의원님 수정안 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하튼 좀 더 검토를 하고……

저는 이게 굳이 동물원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하면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 수정안이 세 의원 방에서 조정 협의안이 됐는데 오늘 양창영 의원님하고 한정애 의원이 안 나와서, 수석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회의 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김용남 위원 대충 봤는데 이게 파격적이기는 하네요.

○소위원장 권성동 예, 파격적이네요.

○김용남 위원 아동복지, 노인복지는 들어봤는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은……

○우원식 위원 꼭 필요하니까……

○장하나 위원 이 얘기를 생소해 하신다는 거 저는 또 당황스러운데요.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의 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공청회 때 충분히 토론이 됐던 내용인데요. 위원장님 혹시……

○최봉홍 위원 부처 간에 얘기가 안 되니까 수석전문위원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해 보세요.

○장하나 위원 환경부는 혹시……

○소위원장 권성동 나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원법 제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부, 동·식물 다 담고 하기에는 법이 워낙 합의 도출을 못 하니까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동물원 분야만 떼서 이렇게 입법 심사를 하셔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족관은?

○환경부차관 정연만 수족관도 같이 포함시켜도 수족관까지는……

○소위원장 권성동 수족관은 또 해양수산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거기까지는 그렇게 큰 갈등이 적기 때문에 식물원만 빼면 동물원으로 해서, 동물원하고 수족관까지는 같이 해서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하여튼 관계부처 한번 의견 들어 보시고, 해양수산부도……

○**장하나 위원** 이견 조정이 산림청 외에는 지금 다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산림청에서 식물원은 아직 안 됐고요.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그거도 안 됐지만……

○**환경부차관 정연만** 나머지는 대충 큰 그림에서 여기에 반대가 심한, 실무선에서 개괄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시다.

○**소위원장 권성동** 자, 그러면 장하나 위원님, 다 됐지요?

○**이인영 위원** 가령 지금 세 의원님의 동물원법들이 조정 협의한 안으로 이렇게 왔으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 법을 다루게 되면 전문위원실에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이 다시 검토보고서를……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검토보고서, 이게 지금 세 분 의원님 안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는 그중에서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오면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서 의결이 되면 대안으로 주로 나갑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상 논의는 이 수정안을 중심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합의 조정된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국회법에서 의거한 법 절차는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세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수정하든 아니면 대안을 만들든 이런 과정에서 이 의견들을 반영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상에서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 발의한 안이든 또 수정·통합된 수정안이든 정부에서 그중에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정부에서 안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이인영 위원** 정부는 지금 그런 안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안 같으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다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안이 아니고 의원님들 안이거든요. 의원님들 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 안에서는 수정안이 나오면 그 수정안을 정부가 수용할 것이냐 이런 절차거든요.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항별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지요.

○**이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시작하면 거기서 조항에 대해서 해당 조항마다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지요. 여기서 장하나 의원님이 제시하셨지만 전체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조문별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부처의 의견을 들었던 것을 수용……

○**소위원장 권성동** 공청회 결과를 봤을 때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상당수가 있어서 원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논의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세 분 의원님이 수정안을 냈으니까 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2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55분)

○**소위원장 권성동**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또 정부가 제출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표로 정리된 부분을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확대를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이 발주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건설공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불법 매립과 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분리발주제도를 확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측,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최봉홍 위원** 특수목적법인이 어떤 게 있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보시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20% 이상 출자한 법인을 얘기하거든요. 출자법인들이 해당이 됩니다.

○**최봉홍 위원** 현재 있습니까, 이런 게?

○**환경부차관 정연만** 최근에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공기관, 지자체 이런 데서……

○**환경부자원순환국장 홍정기** 위원님,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산업단지가 2013년 기준으로 총 1033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공영개발을 하는 게 668개소입니다. 이것은 이미 법에 의해서 순환골자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민간개발이 365개소인데 그중에 민·관이 같이 합작으로 해서 하는 게 3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32개소 정도가 이번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0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사항에 주변 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평가항목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환경오염 방지 측면에서는 필요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할 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할 것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은 이게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관리 강화를 위해서 개정안에 동의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좀 여기에서 중복성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중복성이 시설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딱 넣어 놓으니까 이것은 허가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를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해서 방지 시설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넣어 주는 게 어떠한 생각을 합니다. 수정을……

○**최봉홍 위원** 이것을 타 부처에서는 반대 안합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타 부처에서는 별 반대하는 건 없는데요. 건설자원협회, 민간 업계에서는 좀 더 빼야 하지 않느냐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대로 밀어도 괜찮겠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될 텐데.

○**환경부자원순환국장 홍정기**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처리업 허가에서도 있지만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넣는 거고요. 일부 민간협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용역이행능력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배점 비율이나 이거를 상당히 낮게 하면 그런 우려도 해소하면서 이 법의 목적도 같이 달성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비율을 낮게 하는 거보다 하려고 하면 더 강하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율을 낮게 할 바에야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새로운 항목이 들어가니까 점진적으로 해서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용역이행능력을…… 아,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주변 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거는 애매하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주변 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환경부차관 정연만** 좀 그렇습니다. 시설, 기술인력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인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용역이행능력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실적 평가, 자본금 평가, 기술 평가, 경력 평가 또 신인도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신인도 평가할 때 가점 항목 정도로 넣으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오케이, 알았어요. 위원님들, 강화하는 거니까 과도한 규제가 아니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10쪽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방금 논의한 사항에서요, 정부에서 2항의 ‘시설·기술 인력의 보유 현황’을 ‘노력’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인데, 노력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업 능력’이라든지 그렇게 바꾸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뭘 어떻게 바꿔 달라고요?

○은수미 위원 노력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민현주 위원 그냥 원래 개정안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냥 그대로 하시요, 한정에 의원 안대로. 한정에 의원 개정안대로 그대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다음 310쪽,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당연취소 사유를 확대·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임의취소 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임의취소 사유에서 당연취소 사유로 하고, 또한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허가의 당연취소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처리하고, 비산먼지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허가의 당연취소 요건을 확대·신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처리업 허가의 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고 최종적 제재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른 법률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폐쇄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고,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휴업한 경우’는 그냥 지금처럼 임의취소 사유로 놔두고,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만 당연취소 사유로 신설하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환경부 어때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위원장님은 ‘2년에 3회 이상’에 한해서만 당연취소……

○소위원장 권성동 예.

○환경부차관 정연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상당히……

○소위원장 권성동 폐쇄명령?

○은수미 위원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최봉홍 위원 이거는 개정안에 들어 있잖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폐기물관리법하고 이게 안 맞아 가지고 그래. 이것도 그러면 짝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개별법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냐고, 제재수단을. 같은 환경 법인데 폐기물관리법은 임의적으로 하고 어떤 거는 강제적으로 하고 이러면 서로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허가 취소, 이 제재수단에 대해서 환경 법 다 전부 꺼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준을. 그래야지 서로…… 균형이 맞아야지, 법이라는 것이.

일단은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만 당연취소 사유로 하고 나머지는 임의적으로 해 놓고, 한번 검토를 하고 전반적으로 개정안을 내든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눠서 대표발의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무슨 애기인지 알겠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다음은 314쪽,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 관련 사항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당연 허가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상속인에게 일정 기간 처리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서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개월의 양도 기간은 다소 짧은 측면이 있어서 다른 입법례와 같이 6개월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16쪽, 재정 지원 부분.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집·운반업체가 사용하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게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동일하게 두려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부에서는 다른 폐기물 처리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설치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는 관계부처에서 이거는 형평성 문제에 맞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은수미 위원 다른 법안에서는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전혀 없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임시처리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주처리시설 위주로 해 주기 때문에. 되면 그런 유사한 것들이 죽 들어올 수 있다는 기재부의 우려입니다.

○최봉홍 위원 이걸 확대해 줄 수 없다는 얘기네요?

○은수미 위원 예, 확대해 줄 수 없다는 얘기네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거 빼고 하지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다음에 기타.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기타 부분은 뭐 특별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신청 기간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수탁자의 건설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내용인데요, 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과……

○은수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위원장 권성동 검토 다 안 끝났습니까?

○은수미 위원 예.

○소위원장 권성동 아, 한 사람이 부족하네. 장하나 위원은 가셨어요? 말도 없이 가셨네.

○김용남 위원 가면 어떡해?

○은수미 위원 320쪽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수탁자의 건설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범위에서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제외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 수탁자가 폐지나 고철이나 폐타이어 등을 수집·운반·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여기만 빼려고 그러지요, 아무리 행정편의를 도모한다고 해도?

○환경부자원순환국장 홍정기 이건 행정편의 측면도 있지만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은 허가대상에 비해서 관리 차원에서, 그게 주로 폐지나 폐타이어 이런 거를 처리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저희들이 규제 자체를 완화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배출자가 처리능력 확인하는 경우에도 허가대상하고 똑같이, 신고대상까지 확인 대상에 하는 거는 조금 과도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그게 사실 또 발생량으로 봐도 1% 미만에 불과하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다 수집하지, 폐타이어·폐지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 가지고 조금 이따가 하셔야 돼요」 하는 이 있음)

○이인영 위원 지금 의결이 안 된다니까, 뭘 그렇게 신나게……

○김용남 위원 너무 신나게 이거 두드리시려고……

○은수미 위원 의결이 안 돼요.

○소위원장 권성동 죄송합니다.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머리가 멍하네, 내가.

**2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16시11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23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최봉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최봉홍 위원 이런 순서대로 하면, 정족수도 안 되고, 지금 남은 것이 한 24개 법안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두 분 간사님이 협의해 가지고 46번 사항 이거는 지금 화급을 다투는 법안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외부에 유출이 돼 가지고 지금 보이소피싱이니 파밍이니 온갖 사태가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을 먼저 내놨습니다만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오늘도 내가 흑시나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또 안 되는 것 아닌가……

(웃음소리)

이거 사람 차면 순번 당겨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급한 건데, 두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야당 간사님이 동의해 주시면 좀 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45번요?

○최봉홍 위원 46번.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가 반대해?

○최봉홍 위원 환경부는 반대 아닙니다. 산자부하고 협의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자, 일단 그건 나중에 논의

하고요.

우선 327쪽, 12항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28쪽,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공공하수도의 수입금을 공공하수도 관련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공공하수도 관련 용도 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하수도 수입금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하수도 악취 문제 해결을 통해서 국민 불편 해소라든지 하수도 수입금의 타력적 운용 차원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에서 하수도 관련 적자 및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하수도 관련 용도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하수도까지 용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개정안의 취지는 개인하수도에도 하수도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개정안은 ‘이 법에서 정하는 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의견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게 기본 취지는 하수처리장의, 강 같은 데 악취 발생될 때 개인정화조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관계부처에서. 왜냐하면 여기의 재원이 한정돼 있는 데서 개인까지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래서 관계부처에서……

○소위원장 권성동 지금 이게 뭐예요? 공공하수도의 수입금이…… 법안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국장이 한번 설명해 봐요. 이게 뭐예요? 공공하수도 수입금……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정희석 하수도 점용료나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그걸로 하수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정희석 지방자치단체에

서요. 그런데 하수도 수입금 중의 일부를 정화조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했을 경우 그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 달라는 내용이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지방자치단체가 거둬서 공공하수도에 쓰느냐, 개인하수도에 쓰느냐를 결정할 수 있게끔 재량권을 지자체에 주자는 얘기잖아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정희석 지자체에 재량권…… 일종의 재량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범위를 제한시킨 상태에서 재량권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거기에 범위를 축약시켜 가지고 그 경우에만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악취방지시설에 쓸 수 있도록……

○소위원장 권성동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그거 한번 상정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 정희석 정화조 악취 문제입니다. 정화조 악취방지사업입니다.

○이인영 위원 지금 다 개인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개인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해야지.

○이인영 위원 그런데 너무 노후화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해결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데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시라든지 대규모 도시, 오래된 도시에 왜 옛날의……

○소위원장 권성동 개인정화조.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게 들어오면서 냄새 나서…… 국가에서 이걸 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개인한테…… 개인은 직접적인 피해가 안 오니까 안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최봉홍 위원 그거 풀면 한없이 풀어 줘야 돼요.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최봉홍 위원님.

○최봉홍 위원 개인이 해야 될 거를 하수도료 받아 가지고 해 주면 하나, 둘 확대돼 가지고 전부 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수도료를 모으는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하수도정비대책이니까 그것만 나올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것도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관리하는 주체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관리비를 가지고 준다고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동네 가 보시면 연세 드신 분들이, 능력 없는 분들이 이 노후화된 시설을 그냥 방치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엄격한 조건, 제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방치돼 버려요. 당신이 개인 돈 들여서 하라고 하면 못 하시거든요.

○최봉홍 위원 지금 상하수도 관리비가 수입이 돼 가지고 상하수도 그 목적에, 조례에 의해서 다 못 쓰여지고 있거든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요.

○이인영 위원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 주려고 그래도 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소위원장 권성동 아실 문제인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공공의……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영으로 어떤 제한을, 법령에서 딱 제한을 해서 그런 케이스에 해당…… 안 그러면 그걸 아들이 와서 그 돈을 내서 해결을 하겠어요, 뭐 독지가가 나서서……

○최봉홍 위원 타 부처에서는 어떻게 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행자부만……

○김용남 위원 행자부 의견은 지금 반대인 거지요.

○최봉홍 위원 안 된다고 그러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이인영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위법이 되니까 못 하니까 길을 조금……

○김용남 위원 아니, 하수도 수입금 외의 돈으로는 할 수 있겠지요?

○최봉홍 위원 그건 되지.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개인소유 재산에 지자체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개선해 주면 이게 나중에 선심성 이런

문제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최봉홍 위원 지금 싱크홀 생기는 그런 일들도……

○소위원장 권성동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아주 선심성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인영 위원 그래서 그것은 무분별하게 다 해주자는 얘기는 나도 아니고, 괜히 사전선거운동 다 합법적으로 조장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고 아주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봉홍 위원 행자부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권성동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인영 간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령으로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어떤 경우만 진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내 생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환경부령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법률에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조건하에서 하더라도 해야지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차라리 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제한하는 게 더 투명해지죠.

○최봉홍 위원 의논하실 때 싱크홀까지도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싱크홀 문제도 같이 연관되니까요.

○소위원장 권성동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그것과 같은 내용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아닙니다.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별개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2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5.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16시20분)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김영주 의원과 양창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의 증가로 시·도지사가 생활악취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양창영 의원님 안은 시·도지사가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김영주 의원님 안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등 구체적으로 악취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악취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규정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안 중에서 양창영 의원님 안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김영주 의원님 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조문이 규정되어 있어서 좀 더 바람직한 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의견……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은 생활악취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두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조항은 김영주 의원님 안을 환경부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싶고, 생활악취할 때도 일정부분은 조례에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뒤야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조항, 양창영 의원님 안을 2항으로 해서 1항, 2항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수석님, 수정안을 만들었어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주 의원님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2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게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 같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 조항을 하려면 조항이 하나 더 필요한 것이지요. 그 조항은 없습니다. 양창영 의원님 안에는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과태료 조항은 별도로……

○환경부차관 정연만 별도로 2항을 넣어야 됩니

다.

-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별도로 넣어야 됩니다.
- 소위원장 권성동 두 분, 의견 조율이 됐어요?
-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 소위원장 권성동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 환경부차관 정연만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 김영주 의원과 양창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우리 소위원회 의견으로 받아들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6시24분)

○소위원장 권성동 그리고 의사일정 제21항과 2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 의견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소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25분인데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해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권성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6.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

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26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3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2월 20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소위에서 홍영표 의원이 그 전 소위에서 지적된 법률적 문제 등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지요.

의료폐기물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병원은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학교와 인접한 병원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서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폐기물 관리 및 처리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서 정부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의견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환경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권역별 관리를 하게 될 때에…… 지금 시설들이 집중화돼 있습니다. 병원에 집중화돼 있는 것과 처리시설이 집중화돼 있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그렇게 될 때는 오히려 특정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 안 돼서 문제로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 하고요.

애초에 저희들이 권역별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전국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에 따른 문제인데, 지금도 수도권의 공장 자체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도권의 병원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단지 차이가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이런 차이인데 그 차이에 대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운반하는 과정에서 보관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논리로 지난번에 법을 통과시킬 때 보관용기에 대한 규정을 등록제도, 제조업도 등록하게 되고 또 보관하는 용기도 규격을 엄격히 해서 그것은 운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존에 정리가 돼 있는 사안이라

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전국화 할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지금 환경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의료폐기물이 집중 발생하는 것은 수도권일 텐데 지금 수도권의 처리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권역별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그런데 법안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면, 340쪽 수정의견에 보면 제18조……

○소위원장 권성동 크게 말씀하세요.

○은수미 위원 340쪽에 제18조 개정안에 보시면 해당 권역에서 못할 경우 인접 권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어쨌든 이 취지는 위험한데 우선 이동거리를 최소화시키자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편 등록을 했니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위험요소는 그대로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관용이나 이런 것도 강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동거리를 단축시키면 사고위험도 적어지고 어쨌든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라서 그것에 따른 공공의 실익과…… 예를 들어서 지금 비용이나 과당경쟁이니 하는 이런 것의 문제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것을 비용 문제나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는 건 저로서는 조금 환경부의 답변이 미흡하다.

어쨌든 환경부 입장에서 인접 권역까지도 다 인정을 한 상황이니 가급적이면 이동거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료폐기물 처리를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논의를 했을 때도 지금 장거리 운반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난리가 나던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도록 일단 권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인접 권역에서, 최소한 가장 가까운 권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권역을 이제 설정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하는데 수도권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한 8만 2000t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은수미 위원 그것은 나와 있잖아요. 의료폐기

물 연간 발생량 이것은 다 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접 권역까지 넣은 거잖아요.

340쪽에 제18조제8항1호에 보시면 “의료폐기물 등의 양이 해당 권역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를 만들어 놓고 가장……

이 법의 취지는 어쨌든 이동거리를 짧게 하자는 거거든요.

○김용남 위원 이게 그런데 제8항1호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접 권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일단 해당 권역에서 사실상 적정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처리업체 수가 전국에 수백, 수천 군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업체의 이권하고도 크게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수미 위원 다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과점 문제가 그래서, 업체가 워낙 과점을 해서 장거리 이동을 하는 관행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 법의 도입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거리 이동을 해도 그 업체가 예를 들어 서울의 폐기물을 부산업체가 과점을 해서 뺏어가니 이게 시정이 안 되니, 어쨌든 이게 과점시장이라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과점시장 상황에서라도 가장 인접거리를 줄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이 나온 것으로 제가 그때 이해를 했거든요, 홍영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

○소위원장 권성동 이게 지역별로 업체가 많아서, 수도권도 지금 3개밖에 없는데 한 10개가 되고 처리능력도 발생량보다 초과되고 이래서 지역 권역 내에서 경쟁이 가능하면 권역별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저도 일용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권역별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업체가 워낙 적어서 이것을 완전히 권역별로 제한해 놓으면 수도권에 있는 3개 업체는 그야말로 행복한 비명을 지를 것이고 충청·호남이나 대경·동남권에 있는 업체들은 자기들의 처리용량에 비해서 처리건수가 적어서 또 비명을, 즐거운 비명이 아니라 슬픈 비명을 지를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권역별 내에서 업체들끼리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좀 업체수가 늘어난 후에 이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영 위원 약간 성격은 좀 다르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폐기물하고 다르게.

○소위원장 권성동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이인영 위원 의료폐기물 문제는 확실히 성격을 구분해서 다뤄야 되고, 그것은 다 인정할 것 같은데요? 전염병이든 감염병이든 의료폐기물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돼 있을 때 관리 가능한 부분들하고 전국적으로 확 퍼졌을 때 관리 가능한 부분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최봉홍 위원 정부는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있고 여야 의견도 갈라지고 있는데 오늘 처리하기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 측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일이 있는데, 서울에 지금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 실지 그 업소가 세 군데가 아니고 열 군데가 넘습니다. 처리되는 데는 세 군데인데 수집·운반하고 있는 데는 여러, 수십 군데 되거든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러면 수집·운반하면 그 냉동차량, 그다음 안에 보관하는 것, 이 관계를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넘비현상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처리장은 허가를 받아서 바깥에 있는데 보관하는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주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 일인데 말이 좀 새면 이사 가고 이사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태서 해 주시고.

그다음, 수술했던 그런 폐기물 같은 것은 그때 그때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처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스 한 박스씩 모아서 바로 가야 될 것을 몇 박스씩 모아 가지고 냉동차 오면 한 차 되면 신고 나갑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관에 대해서 좀 철저히, 같이 보완해 가지고 다음에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관리 강화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정부한테 여쭙어 보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업체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이런 관련성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게 의료폐기물인 경우에도 그런 논리로 그대로 얘기해도 정말 괜찮은 건지, 그런 얘기를 해 줘야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

○이인영 위원 예컨대 제가 여쭙 보는 것은, 다른 엉뚱한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정말 권역별로 처리하는 것하고 전체 전국적으로 처리하는 것하고 감염이나 전염이나 이런 질병 등등과 관련한 관리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3개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지역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내에서도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경북이나…… 이게 내려가면 한 네댓 시간, 2시간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 한정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수집·운반하는 과정의 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법을 개정하면서 수집·운반에 대한 것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이전의 용기들도 법대로 제대로 안 지켜지고 또 제작하는 것에 대한 업소를 관리할 수 없다 보니까 품질이 저하된 것들이 막 돌아다녀서 그것도 제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래서 지난번에는 수집·운반에 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태로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이 포션이나 조금 적게 걸려도 몇 시간은 다 걸리기 때문에 일단 수집·운반 쪽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기본 취지고요.

○이인영 위원 아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방사능 관련된 것, 이런 것은 특별한 지역에 특별하게 보관돼야 되니까 서울에서 썼는데 경기도에 없으면 울진까지 갈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경주, 경주.

○이인영 위원 경주,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가까운 데서 끝나도록 처리하는 게 당연히 마땅한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용기가 해결됐다고 그래 가지고 제주도까지 갈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료폐기물 그 품목과 관련해서, 그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시설이 있는 곳들은 어쩔 수 없이 용기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멀리 옮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설득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대한 전염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질병의 확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 건데 이게 환경부라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외국처럼 바로 일반 소각, 가까운 소각시설에 처리하는 것이 수집·운반만 잘 하면 제일 안정되게 처리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홍영표 의원님께서도 ‘아예 멸균 시설을 병원에 의무를 주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것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를 병원에다 할 수가 없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업종이 생긴 이유가 그런 전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집·운반부터 처리까지를 좀 더 특별히 해야 된다, 이 제도가 생긴 것이거든요.

**○이인영 위원** 국토가 좁으니까 별 차이 없다 이런 얘기세요, 그러면 그게?

**○환경부차관 정연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지역에서 그해 소화될 정도가 되고 처리가 완벽하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계 자체가 분포도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권역별로 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은수미 위원** 왜 관리가 어렵…… 인접 지역까지 확대……

**○이인영 위원** 회사를 하나 더 내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회사가 경기도에다 회사를 하나 더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것은 저희들 업계와 굉장히 민원이 생겨서 수도권 내에 잘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고 외곽에 지금 다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나도 이것 권역별로 해 주고 싶은데 수도권에 이것을, 이 처리 업체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요.

**○이인영 위원** 그러면 부산에는 만들 수 있어요?

**○김용남 위원** 이미 돼 있는 거야 뭐……

**○환경부차관 정연만** 현재 있으니까요. 추가로 한다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나중에……

**○이인영 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소위원장 권성동** 여기에서 통과시키면 우리가 진짜 굉장히 위험한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은수미 위원** 그런데 이것 실제로 사고가 나고 나서 이 법안이 발의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의료폐기물 사고가 났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데 지금 상태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27.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16시56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27항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45쪽입니다.

먼저 국가 및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 홍보 등 업무를 거버넌스 조직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거버넌스 조직의 전문성 활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위임 규정 신설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거버넌스 조직’이라는 용어를 규정한 입법례가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 조직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거버넌스 조직에는 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많으나 관 주도의 조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임과 위탁 모두 가능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조항인데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자체는 거버넌스 조직의 활동에 대해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조직의 적극적 민관협력 유도의 필요성 그리고 거버넌스 조직이 정부 주도의 권고를 통해 설립된 단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은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과도하게 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수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의견은?

○환경부차관 정연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이게 '의제21'이라고 지역이 가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시 업무 일부를 위임해서 수행을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인가가 개정돼 가지고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시민단체에 지원할 수 없게끔 규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사실상 지원을 받아 오던 지방 의제21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전혀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 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고치면 안 되나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관계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법률 규정 형식에 비추어 봐서.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나도 이게 현행 규정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있다'라고, 수석님.

○최봉홍 위원 이게 시민단체도 다 들어갑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요,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있어요.

○김용남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버넌스라는 개념 자체도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거버넌스의 개념 자체가 여러 가지 뭐랄까, 이게 확립된 정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것을 법률에 '거버넌스 조직'으로 이렇게 조문을 바꾸는 게……

○소위원장 권성동 '이하 거버넌스 조직'은 빼도 되는 것 아닌가요, 민관협력단체의?

○최봉홍 위원 이게 바뀌면 기업, 시민사회 단체는 못 받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거버넌스 조직이 받게 되네.

○소위원장 권성동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대로, 현행대로?

○최봉홍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아, 그런데 이것이……

○민현주 위원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가는 건 아닌……

○소위원장 권성동 아, 이렇게 특정을 해 줘야지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민현주 위원 예, 그렇게 무작정 그냥 포괄시켜 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권성동 틀린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이것을 넣어 줘야지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이 조직이 있어요. 모든 지자체에 다 있고 다 하고 있거든요.

○이인영 위원 할 수 있다?

○소위원장 권성동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할 수 있다'라고 고치게 되면 수정의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부분을 삭제해도 됩니다.

○최봉홍 위원 예산의 범위 넣어야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의견과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의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최봉홍 위원님?

○최봉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 통과됐다면……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최봉홍 위원님 아까 46항, 환경부하고 의견 조율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음에?

○최봉홍 위원 죽 하자 해 놓고 또 그다음에 하

자 해……

○**김용남 위원** 그러면 오늘 일단 논의를 한번 해 보지요.

○**은수미 위원** 그것은 협의를 해야 돼요.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다음에 해.

○**최봉홍 위원** 급하기는 굉장히 급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합니다, 정부가 왔다 갔다 하니.

○**소위원장 권성동** 이게 5건을 해야 되지요.

**28.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이윤석 의원 대표 발의)(계속)**

**32.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정부 제출)(계속)**

(17시04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2항까지 최봉홍 의원, 전병헌 의원, 이완영 의원, 이윤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자료 4권이 되겠습니다.

4권의 1쪽에 지난 4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날 논의되었던 사항으로서는 먼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판단하게 되면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수익성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방치하게 되어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공적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에, 폐기물은 쓰다 남은 자원이기 때문에 폐기물과 자원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활용 기반을 어떤 식으로 확대·강화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과 개별법, 정부주도형과 민간 협력 모델, 고물상 입지 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이해 문제, 폐기물이나 자원이나 하는 쟁점

들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소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지난번에 야당 위원님들이 조금 반대하시거나 조금 이렇게 제시했는데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무슨 입장 변화가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조문 심사를 하는 거니까.

○**이인영 위원**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병헌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체계하고……

○**소위원장 권성동** 완전히 틀리지요.

○**이인영 위원**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법체계가 너무 틀려요.

그런데 전병헌 의원이 우리 당의 그래도 최고 위원이신데 원내대표도 하시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견을 조정하거나 해소하는 과정들이 없이, 만약 여기에서 이견 조정이나 해소가 가능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합의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지난번에 우리가 공청회를 할 때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도 대체적으로 정부의 그런 방침이라든가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본적으로 옳다,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전병헌 의원이나 또 다른 의원이 제출한 법안하고 상충 문제가 있어서 그 이견을 해소하는, 즉 설득하는 시간과 그런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진짜 선진제국에서 다 이런 식으로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순환자원은 자원을 순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으로 다 나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나가야 오히려 행정규제도 줄어들고 또 환경부의 그런 과도한 규제권한도 좀 해소가 되고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좀 더 노력하시고 또 우리 야당에서도 좀 대승적인 결단을, 물론 전병헌 최고위원이 계시지만 대다수 의견이 그렇다 그런다면 다음번 회의할 때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이 법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좀 특정한 부분에서 소수의 주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가지 큰 영역에서, 큰 골자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체계에서도 기본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촉진법, 개별법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 속에 폐기물을 포함할 거냐, 아니면 폐기물 속에서 자원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영역을 설정할 거냐 이런 등등 아주 굵은 개념에서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병헌 의원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설득해서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에서는 또 극명성이 살아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냥 정치적인 지위·무게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당내에서도 명백히 그런 것은 이견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부도 자기 법체계에 대해서 좀 열어 놓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뭐 좁혀질 수 있는 지점들이 잘 안 생기는……

○소위원장 권성동 이게 좁힐 수가 없는 부분인데……

○최봉홍 위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권성동 선택의 문제지.

○이인영 위원 죄송하지만…… 아까 이완영 의원님도 이거 시작되기 전에 다녀가셨는데 ‘기본법으로 안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차관님이 또 모시고 나가서 막 설명하고 그러시던데요. 그건 거기 안에서든 마참가지로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조금은 더, 다시 그 해법을 찾는 과정들을 가져가야지 이게 뭐 야당에서 특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만의 문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어요.

○소위원장 권성동 말씀하십시오.

○최봉홍 위원 참 국회의원 된 게 좀 한스럽습니다. 특히 입법소위에 앉아 있는 게.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분명하게 지금 양론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폐기물의 범위를 현재처럼 해 가지고 계속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선진화해서 바꿀 것이냐, 문제는 그겁니다. 그 거인데, 지난 3년 동안에 저를 찾아온 폐기물업체들, 의원실에 방문한 업체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 지금은 전병헌 의원님한테 가셔도 말씀을 드리고 이완영 의원님한테 얘기도 하고 다 하면서 방향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통일이 되었습니다.

딱 두 사람이 아직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 전체 법의 이행주체나 목적이나

용어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이의는 별로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주장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에, 우리 국회 전체가 거기에 맡겨 가지고 어느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판정을 못 짓는 데 대해서 상당히 혼자 자괴감을 좀 느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환경부가 확실한 태도를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데 보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누가 한다 해 가지고 그쪽에 흔들려 가지고 그 주장을 바꿔 준 것도 문제고, 이게 지금 안이 나온 지가 한 3년 안 됐습니까. 3년 동안에 쪽 얘기를 하면서도 누가 내느냐, 누가 그 방에 찾아가 얘기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흔들린다 하는 이 자체는 환경부 자체의 자원에 대한 정책 자체가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도, 위원님……

○소위원장 권성동 됐어요, 됐어요. 환경부 입장은 다 알고……

○이인영 위원 끝나고 저한테 좀 그걸 그러면 소상하게 가르쳐 줘 보세요. 어떤 이해관계와 인맥이……

○최봉홍 위원 어제도 사람 찾아가 가지고 했잖아, 거기도 다.

○이인영 위원 저는 별로 사람들 안 만나서 잘 몰라요.

○소위원장 권성동 잘 모르시……

기본법안하고 촉진법안하고 이것이 어떻게 서로가 조정이 돼서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률 체계에 관한 문제인데,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의 문제지 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환노위 간사로 오자마자 소위 말하는 이 기본법안에 찬성하는 그 환경 관련 단체, 폐기물협회나 이런 사람들 한 30명을 반 강제적으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의견들 쪽 들어 보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도 정부가 제출한 이 방안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거꾸로 이 기본법안처럼 했을 경우에 오히려 폐기물 관리가 더 안 되고 오히려 우리 환경오염의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간사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하지만 다음 법 할 때는 좀 진짜 비교·검토해 가지고 어느 것이 나은지, 진짜 우리가 우리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또 우리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나은지를 좀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3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17시13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33항부터 35항까지 주영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52쪽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몇 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2권입니다, 2권.

○소위원장 권성동 352, 예.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등)의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시 해야 하는 3개 법률(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 중 하나만 하면 나머지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은 의제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에서 주유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시에 3개 법에 따른 신고를 다 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행정상 불편이 발생하고 만약 누락 시에는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세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 개정안을 통한 의제 근거 신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3개 법률을 동시에 다 개정하기 때문에 부칙 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양정밀조사 결과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등을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환경부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는 조사 결과도 환경부가 제출받아서 정보시스템에 통합 구축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의하면 제5조4항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하는 토양정밀조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양정밀조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정부 측은 수정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은수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예?

○은수미 위원 동의한다고요.

○소위원장 권성동 동의합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주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4항 주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주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의사일정 제39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4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17시17분)

○소위원장 권성동 39항에서부터 41항까지 김제남 의원, 김상민 의원, 양창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앞의 거하고 대안으로 같이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입법조사관 김대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아까 주영순 의원님 한 거.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럼 대안으로 해야 되나요, 이게 통과가 되면?

의결을 또다시 해야 되네. 아까 의결했는데……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3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어정의 관련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잠깐만. 아까 담당 국장이 이와 관련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할 게 있다고 그랬는데……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예, 지금 나눠드릴 겁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설명드리고……

○소위원장 권성동 먼저 설명 듣고 하는 게 낫나? 어떤 게 나아요,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먼저 설명을 듣고, 수정안이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마련한 안으로 그렇게……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먼저 수석님이 보고 하실래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먼저 내용은 이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사만 정의가 돼 있는데 장거리이동대기 오염물질을 황사, 미세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이동을 통해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김상민 의원안은 황사 외에 미세먼지를 추가하고 있고, 김제남 의원안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정의해서 여기에 황사, 미세먼지 외에 방사능물질, 산성비 등의 물질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제남 의원안은 제22호에 정의를 추가하고 있는데 용어정의 위치를 유사 개념인 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제1의2호의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뒤로 변경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상민 의원안은 미세먼지 정의를 제13조의 조문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에 함께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국가 대기질통합센터에 민간 연구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는 환경부장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민간 연구기관도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로 지정·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의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은 대기오염 예보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할 인력·장비 보유 여부,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국가 기관들과의 협력 가능성, 책임성 확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민간 연구기관 중에는 국가센터로 지정될 수 있을 정도로 인력·장비 등 역량을 갖춘 곳이 지금 현재도 없고, 국공립 연구기관도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는 대기질 통합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381쪽입니다.

황사 및 미세먼지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김상민 의원안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김제남 의원안은 현행과 같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중국의 급속한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85쪽입니다.

황사대책위원회의 명칭을 현재 김상민 의원안은 '황사 및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로 하고 김제남 의원안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관인 위원장을 장관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급을 환경부장관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이었으나 황사대책위원회 회의 실적이 저조해서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라 2012년 5월에 차관급 위원장

으로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황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단순히 원래대로 상향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미세먼지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김상민 의원안에서 황사대책위원회에 두도록 한 국가황사연구단체를 삭제하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황사연구단이 2012년부터 범정부적 연구단체로 확대 개편되었고 현재 각 부처 및 산하연구기관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황사 및 미세먼지 연구센터 신설 관련 사항입니다.

김상민 의원안은 제14조의2를 신설해서 황사 및 미세먼지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있는데 황사대책위원회를 지원하던 일종의 네트워크 연구단이던 국가황사연구단 대신 독립 상설기관인 황사 및 미세먼지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제7조의3에 따라 2014년 2월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가 설치돼서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대기질 관리를 위한 주요 대상물질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 업무를 신설된 대기질통합관리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국제협력 관련 사항은 현재도 국제협력 사항 있습니다만 황사 및 미세먼지 또는 장거리대기오염물질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으로 이것은 조문만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양창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결함 시정명령 관련 내용입니다.

자동차소유자 등의 부품결함 시정요구에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기간을 정해서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52조3항의 ‘기간을 정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자동차제작자가 부품의 결함 시정요구 건수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지금 무엇을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방금 검토보고 중 한 것 중에서 저희들 수정안 갈아드린 내용을 보시면, 김제남 의원님께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미세먼지 등’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미세먼지 정의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미세먼지를 포함한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이동물질을 하려면 ‘먼지 등’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호에 ‘먼지’ 이렇게 되면 22호에 ‘미세먼지 등’ 되어 있는 것을 ‘먼지 등’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은수미 위원 그래도 미세먼지를 포함한다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먼지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니깐요.

○이인영 위원 방사능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방사능낙진 이런 것?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것도 이동물질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 간에 나누어져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조의3에는 아까 수정의견처럼 현행유지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의 조항들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황사 피해 용어를 다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조문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고요.

다음에 제일 되는 것이 위원회 문제인데요, 수정안 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부장관으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장관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차관으로 저희들 정부가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차관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연구단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되면 김상민 의원님 말씀하신 연구센터를 별도로 두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양창영 의원님이 제시하신 자동차에 관련된……

○소위원장 권성동 몇 쪽이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396쪽의 결함 시정명령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399쪽의 양창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보고에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만 남네. 환경부장관으로 할까, 차관으로 할까……

○이인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 볼게요.

그냥 농담처럼 묻는 게 아니라 방사능낙진이라든가 화산재, 이런 것은 뒤에 해당합니까?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지금 방사능은 저희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아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인영 위원 대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상관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 들어갑니다.

○이인영 위원 명백히 들어가겠지요, 그것은.

○환경부차관 정연만 들어가는데, 문제는 정부체계 내에서 환경부 관련법에서 배제해서 저쪽이 관리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방사능에 관한 오염물질 관리는 원안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화산재는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화산재는 환경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은수미 위원 장관·차관 문제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것 굳이 장관으로 올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차관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장관이 하나?

○이인영 위원 장관님을 믿고 차관님을 못 믿고 그래서가 아니라요.

○소위원장 권성동 나는 여기 민간 연구기관 있

잖아요, 김상민 의원안 미세먼지 연구센터? 이것 민간 연구기관도 이렇게 규정해 놓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지만 그런 요건을 갖춘 기관이 있으면 민간 연구기관도 지정하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은 민간에 그런 요건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공공기관부터 안정화되면서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민간이 잘 되어 있고, 이게 일반화 되면 그때는 당연히 열어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공공기관에다 맡겨 놓으니 공공기관이 자꾸 그것을 감추고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니까 지금 민간 연구기관 집어넣겠다는 것 아니예요?

○은수미 위원 삼성도 그렇게 감추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지.

○이인영 위원 한번만 다시 물어볼게요.

탐구생활처럼 듣지 마시고, 방사능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쪽 원자력위원회에서 한다고 쳐도 그게 지금 가령 외국에서 날아오는 것……

○환경부차관 정연만 중국 같은데요?

○이인영 위원 제가 중국이라고 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차관님이 칭하신 거예요.

꼭 중국이 아니라도 그런 데서 만약에 그게 날아온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서 처리 안 하고 원자력위원회나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를 타고 날아오는 것을? 여기에서 사고가 터져 가지고 이래저래 하게 됐다, 에너지를 관리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구분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현재 정부 기능으로서, 지난번에 일본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전반적인 종합 정부 컨트롤타워가 그쪽에서 했습니다, 원안위에서.

○이인영 위원 아니, 평상시에도 그러면 그쪽에서 이것을 관리하나요, 대기를 타고 들어오는 것들을?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쪽도 일부, 원래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지난번에 일부만 저희들이, 먹는 물에 하는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일본 것도 그쪽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중국이라든지 외부 인접국가에

서 날아오는 것 전체적인 관리는 행정법률 체계 하에서는 그쪽으로……

○이인영 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고가 안 나고 만약에 대기물질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쪽에도 관리해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지금 그쪽에서도……

○이인영 위원 이 법의 대상이나,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쪽에서 공기 중 방사능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너무 그렇게 방어적으로 하지 마시고, 초기에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능동적으로 막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기상청이 방사능 물질 이동 경로와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대기 쪽의 것은 방사능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환경부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못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 역할분담에 따라서 그쪽에서 다 했고요.

○이인영 위원 저는 잠정적으로 대기를 타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우선 이쪽에서 다 포함을 해서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겨서 처리를 할 때 그럴 때는 거기에서 다시 관찰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꼭 사고가 터져야지만 흐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게?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 문제를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리고 이 법안 관련해서, 부품의 결함시정 관련해서 1항, 2항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부품이에요, 배기가스 배출?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예, 배기가스 부품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지금까지 환경부장관이 부품 결함 시정명령 내린 적 있나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예, 일부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 가지고 이행 안 했어

요, 했어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어떤 경우, 언제 했지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회사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결함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몇 년도에?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13년도에 12개사 부품이 무상보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12개사?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12개 회사요.

○소위원장 권성동 우리나라에 자동차제작사가 12개 회사가 됩니까?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최흥진 수입차도 있습니다. 다 포함돼서 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이 3건 39항부터 41항까지, 앞에서 의결했는데 35항 주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9항에서부터 41항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 발의)

43.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 발의)

(17시36분)

○소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42항·제43항 양창영 의원과 백군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기상법은 안 해요?

○소위원장 권성동 기상법은 시간 없어서 다음에 하지요.

기상청장 오면 하면 되지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4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수도법은 건축주에게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일괄해서 위임함에 따라서 헌법에서 정한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법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것은 시행령에 있는 조항을 법으로 상향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김용남 위원 다른 안에 대해서는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이 개정안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2조1항2호에 따른 건축물인데 사실상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도 실효성이 좀……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요, 이것 시행령에 그대로 놔두고, 별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저희들은……

○소위원장 권성동 양창영 의원님한테 제가 나중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다음은 405쪽입니다.

군부대 수도시설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군부대 지역의 수도시설과 위생관리를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군부대 식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는 대체토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내용은 현재 군부대 상수도 보급률은 44%에 불과하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군부대는 지하수 등을 용수로 이용하고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가 수도시설 보급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수도물을 대량으로 사용하

는 시설을 사용·설치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 의견 말씀하세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저희들은 검토보고 중에서 재정적 지원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기술적 지원은 가능한데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사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잠깐만, 여기 육군본부 시설실의 이송채 대령이 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육군본부시설실 이송채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이송채 대령입니다.

일단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례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례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강제 조항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정말 열악한 군부대에 상수도를 해 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조항을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능하면.

○소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추어서 재정적 여력이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요?

○육군본부시설실 이송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민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현주 위원 지금 검토보고 요지에서 ‘이것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딱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이것 정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합니다.

저는 이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기술적·재정적 지원 모두 다 할 수 있는 근거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하수법에서 안심지하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빠지고 검토보

고의 요지에서 앞부분에 ‘취지 타당함’ 그것만 짚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타당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지하수법에 의해서 안심지하수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동시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이 부분은 군부대에서 상수도 보급하는 경우에 거의 다 국방부 예산으로 하기는 해요.

그런데 원수관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수도관 분류가 끝나는 지점에서 더 연장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군부대는 더 연장을 하고 거기서 다시 지선을 깔아 가지고 군부대로 들어가는 데 지선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군부대 예산으로 하는데 본관을 연장하는 문제, 이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는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자체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 줘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수미 위원 본관을 연장하는 것……

○소위원장 권성동 본관을 연장하는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의 없으면……

○은수미 위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환경부차관 정연만 이게 기재부에서 예산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이 제대로 준수 안 되고 지원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소위원장 권성동 지자체 예산이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런 우려를 해서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소위원장 권성동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자체 예산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기재부에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백군기 의원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양창영 의원안은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복잡합니까?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이것 연동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4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43분)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이것까지만 하고, 정부가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임시국회가 끝나지만 7월 9일 날 법안소위를 한 번 개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 괜찮으시지요?

○최봉홍 위원 다 안 했습니까, 할 것?

○소위원장 권성동 지금까지 제출된 것 중에 심사가 안 된 게 많아서 이인영 간사께서 계속 하자 그러셔서.

○최봉홍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참석 못 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참석 못 합니까? 그러면 날 짜를……

○이인영 위원 그러면 의원직 사퇴하고 참가하지 마세요.

○최봉홍 위원 사퇴해야지, 그러면.

○이인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취미 생활로 얘기한 게 아니니까.

○소위원장 권성동 아니, 나중에……

일단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41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연동제를 법률에 명시해서 환경정책 및 국토정책 간 실질적 연계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국토계획에도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계획도 국토계획의 공간성 등을 반영해서 수립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현행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인데 개정안은 국토종합계획에 맞추어서 2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요.

다만 20년으로 연장할 경우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20년 장기 환경계획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5년마다 중기 정비를 통해 국

토계획과 연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환경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은수미 위원** 이렇게 연동제 도입을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연동제 도입을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 내용이 뭔지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환경부차관 정연만** 위원님, 3항·4항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특히 4항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안들을 공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계획에 환경계획을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시키는가 하고 또 환경계획에 공간계획을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귀속을 받으니까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은수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뭔가,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무엇이 있으니 이 법안의 근거를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뭐냐고.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위원님, 409쪽에 보시면 연동제 대상을 죽 해 놔는데요. 국토계획에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 등 세 가지 계획, 환경계획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세 가지 계획,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양 부처가……

○**소위원장 권성동** 환경부가 인발브(involve)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지금까지 못 해 왔는데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국토부하고 협의됐지요?

○**환경부차관 정연만** 예, 협의됐습니다. 이것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해 가지고 이 조항 만든 것 같습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국토부에도 같은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 9일 날 안 됩니까, 7월 9일 날?

○**은수미 위원** 오전이면 돼요, 저는.

○**소위원장 권성동** 오전만 해서는 안 되지. 하루 종일 해야지.

○**은수미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8일 날 하시지요.

○**소위원장 권성동** 8일 날은 내가……

○**이인영 위원** 아, 8일 날은 국회가 있는 날이 잦아요.

○**소위원장 권성동** 7월 13일 괜찮으십니까?

○**최봉홍 위원** 그것은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해 가지고 날짜 잡으면 다 올 것 아닙니까?

○**이인영 위원** 그러면 안 모이실 거예요.

○**은수미 위원** 13일은 저는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일단 7월 13일 하루 하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또 정하도록 하고, 7월 13일 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환경부를 할지 노동부를 할지 봐서 하여튼 하루 하도록 그렇게 정하도록 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7월 13일 날 비워 주십시오.

○**최봉홍 위원** 그리고 발언 좀 하십시오.

○**소위원장 권성동** 예.

○**최봉홍 위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순법, 실제 저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 했는데 한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 가지고 자원순환사회 기본법이나 이게 이론적인 체계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반대를 해서 안 된다는, 이 법이 통과 안 된 데 대해서 비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 이것을 다룬다 하면 그때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이론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든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 이론적으로 말씀드렸지요. 그것을 비이론적으로 들으시니까 그런 거지요.

○**최봉홍 위원** 이론적이 못 되니까 그렇지.

○**이인영 위원** 기본법하고 개별법하고는 기본적으로 이론 체계가 다른 건데, 법 이론에서도.

○**최봉홍 위원** 기본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인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권성동 기상법을 오래 기다렸는데, 이게 지금 법이 당장 통과 안 돼도 기능 수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최봉홍 위원 하나는 지금 합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거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하고 있으니까 법적 근거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7월 13일 날 넣어 놓고 7월 13일 날 오늘 못 한 것부터 하고 다시 또 논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 법안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7월 13일 날 다시 만나서 회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하겠습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권성동	김용남	민현주	심상정
우원식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최봉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차관	정연만		
기획조정실장	백규석		
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자원순환국장	홍정기		
환경보건정책관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	최홍진		
상하수도정책관	정희석		
환경정책관	박광석		
육군본부시설실령	이승채		